

國際聯合事務局職員의 採用에 있어서의 地域的配分原則에 對한 檢討

—特히 第5委員會를 中心으로—

崔鍾起

— 目 次 —

一. 序 論	2. “地域的인 配分”에 關한 論難點
1. “地域的 配分”原則規定의 採擇過程	3. 適用의 範圍와 基準
二. 本 論	三. 結語 “地域的配分”原則의 諸問題點
1. 憲章規定의 “地域的配分”原則	

一. 序 論

오늘날 國際聯合 總會 및 第5委員會에서 論難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은 事務局職員의 地域的配分(geographical distribution)에 依한 採用問題이다.⁽¹⁾ 이것은 單純한 國際公務員의 採用이라는 行政的인 問題이니, 國際政治上의 問題로서 東·西間에 激論을 벌리고 있다.⁽²⁾

(1) Leland M.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U.N. Secretari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XVI, No. 3, Summer 1962, p. 465.

(2)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Eleventh Session, *Fifth Committee*, 1956—1957, New York, pp. 181—187, 189, 19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7, pp. 149—153, 155—162, 171—176, 177—179, 227—232, 232—23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8, pp. 99—104, 107—112, 113—11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9, pp. 155—158, 159—161, 163—167, 169—171, 22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0, pp. 175—176, 177—179, 181—186, 187—191, 202—203, 207—211, 215—217, 219—221, 229—232, 305—30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1, pp. 91—92, 94—96, 99—100, 122—125, 127—132, 133—137, 139—144, 145—150, 151—155, 157—159, 183—188, 189—194, 195—197, 199—200, 232—235, 237—240, 246—248, 249—252, 35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2, pp. 209—213, 215—218, 219—220, 225—229, 232—236, 237—241, 243—248, 249—255, 258—261, 263—267, 382.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pp. 178—179, 812. YBUN, 1950, p. 4.

YBUN, 1951, p. 2. YBUN, 1952, p. 2. YBUN, 1960, pp., 547—548, 557—559, 560, 574—575, 586, 587.

YBUN, 1961, pp. 536—538. 539—544.

YBUN, 1962, pp. 512—52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nexes*, 1958—59, Agenda item 53, pp. 1—10.

다시 말하면 國際聯合과 專門機構等 人事面의 問題點으로서 每年 가장 論難의 對象이 되는 것이 職員採用에 있어서 地域的 配分原則의 適用問題이다.

本稿에서는 國際聯合의 第5委員會에서 人事政策面을 檢討함에 있어 地域的配分問題가 하 나의 政治的인 問題로서 如何히 論難되고 있는 가를 中心으로 檢討하고자 한다.

1. “地域的 配分”規定의 採擇過程

國際的인 事務局의 職員採用에 있어서 廣範圍한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한다는 觀念은 國際聯盟의 事務局을 設置하였을 때에 配慮되었다.

1919年「파리」會議時 國際聯盟規約에 對한 英國側提案은 長官(Chancellor: 後에 聯盟規約에 서는 事務總長으로 呼稱되며 있음)이 다음과 같은 比例로 10名의 永久職인 事務局職員을 任命할 것을 要請하였다. 즉 理事會의 各理事國에서 一名씩, 理事會의 理事國이 아닌 東歐의 2個國家에서 2名, 南美 1個國에서 1名, 其他 國家에서 2名을 任命하도록 提議하였다.⁽³⁾

그러나 이와같은 英國側의 提案은 國際聯盟의 最終 規約으로서는 受諾되지 못하고, 다만 “事務局의 職員과 事務局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事務總長에 의하여 任命・構成되도록” 規定되었다.⁽⁴⁾(規約 第7條 3項)

聯盟規約을 審議할 때 中立諸國에서는 事務局의 職員採用面의 國籍別配分에 있어서 均等한 採用이 이룩될 것을 強力히 要望하였다. 「스페인」에 의하여 提案된 規約改正에 關한 内容을 살펴 보면 規約條文에 다음과 같은 語句를 插入할 것을 主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可能하면 事務局과 事務局職員은 여러 國籍所有者로써 構成하여야 될 것”이라는 點을 指摘하였다.⁽⁵⁾ 이 原則은 規約에 規定되지는 못하였으나, 之後에 聯盟의 人事行政面의

ORG A, 14th Sess., *Annexes*, 1959, Agenda item 54, pp. 1-16.

ORG A, 15th Sess., *Annexes*, 1960-61, Vol. II, Agenda item 60, pp. 1-16, 22-25.

ORG A, 16th Sess., *Annexes*, 1961-62, Vol. III, Agenda item 64, pp. 1-16, Agenda item 61, pp. 10-13.

ORG A, 17th Sess., *Annexes*, 1962, Vol. I, Agenda item 70, pp. 1-30.

(3) David H. Miller, *My Diary at the Conference of Paris*, Vol. IV, document 226, p. 41.
Tien-Cheng Young, *International Civil Service: Principles and Problems*,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Brussels, 1958, pp. 89-90.

(4) Mirosłas Gondorowski, *Société des Nations et Problème de la Paix*, Tome I, Paris Librairie Arthur Rousseau, Rousseau & Cie, Éditeur, 1927, p. 275.
F.P. Walters, *A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60, p. 47, 77.

John I. Knudson, *A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Turner E. Smith & Co., Kingsport, Tennessee, 1938, p. 55.

(5) Miller, *My Diary at the Conference of Paris*, op. cit., p. 89.
Tien-Cheng Young, *International Civil Service*, op. cit., p. 90.
Egon F. Ranshofen-Wertheimer,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45, pp. 351-353.

指針이 되는 規則으로서 公式的으로 採擇되었다. 즉 聯盟의 職員服務規程(the League Staff Regulation) 第 10 條는 “第 1 部⁽⁶⁾(First Division)에 屬하는 職員은 事務局의 國際的인 特性에 對한 特別한 配慮下에 聯盟의 各 加盟國에서 國籍이 다른 職員을 採用함으로써 重要한 協調를 確保하여야 된다”는 點을 規定하였다.

그러나 事實上 聯盟이 課業을 遂行하고 있을 때 加盟國으로 부터 그들의 國籍所有者가 事務局의 採用可能數에 未達되어 있다는 不平이 그치지 않았다.⁽⁷⁾ 이와 같은 不平으로 因하여 事務局의 職員構成에 있어 國籍所有者를 가진 나라가 1920 年에는 全 加盟國의 40「퍼센트」였던 것이 1938 年에는 80「퍼센트」로 漸次 改善되었다.⁽⁸⁾ 즉 事務局은 初創期에 加盟國中 30 餘個國의 國籍을 가진 職員들로 構成된 것이,⁽⁹⁾ 그後 國籍이 다른 50 餘個國의 職員들로 構成되어,⁽¹⁰⁾ 用語와 宗教 및 慣習 등이 다른 國民이 國際聯盟이라는 共同의 廣場에서 勤務를 하게 되었다. 聯盟의 事務局에 從事하는 職員은 國際公務員으로 呼稱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이 強調되었다.⁽¹¹⁾

國際的인 事務局에 國籍이 다른 職員을 알맞게 配分하여 採用한다는 것은 國際機構와 加盟國間의 協調를 增進시키기 위한 方便이기 때문이다. 國際聯盟의 經驗에 비추어, 이와 같은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이 健全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聯盟事務局問題를 다룬 學徒들의 見解이었다. 즉 그러한 弊端을 指摘한 内容을 보면, “將次의 如何한 國際的인 事務局도 聯盟事務局 보다는 地域의 또는 文化的인 國籍이 다른 職員으로 代表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 指摘된 바 있다.⁽¹²⁾

이와 같이 國際機構를 通한 職員採用에 關한 人事政策은 地域的인 配分問題를 圓滑히 解決하는 못하였으나, 그것은 계속 國際聯盟의 事務局에서 試圖되었으며 第 2 次 世界大戰中에 設置된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¹³⁾를 비롯하여 戰後에 誕生된 各 專門機構⁽¹⁴⁾와 國際聯

(6) 崔鍾起, 國際行政, 서울: 法文社, 1963 年, 210 頁. 事務總長·副事務總長·事務次長·局長級斗課長·課員 및 語言部門에 從事하는 職員들이다.

(7) Tien-Cheng Young, *International Civil Service*, op. cit., p. 90.

(8) Ranshofer-Wertheimer,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p. cit., pp. 356—357.

(9) Walters, *A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op. cit., p. 76.

(10) Knudson, *A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op. cit., p. 53.

(11) Discours d'Inauguration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de l'organisation du Secretariat et des Finances de la Société, Société des Nations, Actes de la Première Assemblée, Séances des Commissions II, 1920, p. 84.

(12) Ranshofen-Wertheimer,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p. cit., p. 364.

(13) FAO Constitution 第 8 條 3 項은 “職員을 任命함에 있어서 事務局長은 職員에 對하여 高度의 能力과 能率을 參酌한다는 것이 職員採用에 重要한 것이나, 可能하면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하여 職員採用은 挑拔되어야 한다.”

(14) UNESCO Constitution 第 6 條 4 項 및 WHO(世界保健機構)의 第 35 條, ILO(國際勞動機構) 第 9 條 2 項, IBRD(國際開發復興銀行) 및 IMF(國際通貨基金) 第 12 條 4 項 d, South Pacific Commission(南太平洋委員團) 第 13 條 42, Caribbean Commission 的 第 14 條 4 項 等에도 職員採用에 關하여서는 각각 “地域的인 配分” 原則를 適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合 憲章 第 101 條 3 項에 規定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憲章에서 職員採用의 地域的인 配分問題를 規定한 條項을 보면, “職員의 採用 및 服務條件의 決定에 있어서, 제일 먼저 考慮할 것은 最高水準의 能率, 能力 및 誠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職員을 “可及的 廣範圍한 地域的인 見地에 依하여 採用한다는 重要性에 비추어 이것을 考慮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憲章은 職員採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高度의 能率, 能力 및 誠實性”을 確保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으로 可及의 이것을 廣範한 地域의 配分의 原則을 適用하여 達成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憲章에 “地域的 配分” 原則이 規定되기 까지는, 聯盟의 經驗을 考慮하여 1944 年 「담바톤·옥스」 會議(the Dumbarton Oaks Conference)에서 美國이 提案한바 있으며,⁽¹⁵⁾ 그것이 「샌프랜시스코」 會議에서 큰 論難 없이 採擇되었다.⁽¹⁶⁾

이와 같이 憲章에서도 職員을 採用함에 있어서 地域的인 配分原則을 適用하여, 文化·教育·言語·行政的인 經驗·相互間의 理解心의 缺如 등 差異가 있는 各國으로 부터 모여든 職員을 採用하여 그들로 하여금 共通의 目的인 國際機構의 設置目的을 遂行케 함으로써 그것을 完遂하는 것이 至難한 課業이 된것을 理解할수 있다. 그러나 反面에 地域的 配分原則의 適用은 그와 같은 難關을 克服하기 위하여 各 加盟國의 協調를 다짐함으로써 보다 國際機構의 發展을 期하려는데 있다.

國際機構의 事務局職員의 採用이라는 國際行政의 問題인 “地域的 配分”이라는 問題가 行政面이아기 보다 하나의 國際政治上의 問題로서 每年 國際聯合에서 論難이 되풀이 되고 있다. 즉 採用可能數에 未達된 國家와 採用可能數를 上廻하는 加盟國間에 “地域的인 配分” 原則은 冷戰 속의 東·西間의 對立된 問題로서 새로운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

二. 本論

1. 憲章規定의 “地域的 配分” 原則

國際機構의 事務局職員은 國際的인 地域的配分의 原則에 依據하여 採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單純한 衡平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效率의 行政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것이다. 國際社會에서 어떤 國家 혹은 地域도 人間의 知慧를 獨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務局은 多樣性 있는 文化, 傳統 및 信念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見地 밑에서 오늘날 國際公務員의 採用에 있어서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이 採擇된 것이다.⁽¹⁷⁾

(15) *Postwar Foreign Policy Preparation*,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3580, Washington, 1949, p. 605.

(16) UNCIO, *Documents*, Vol. 7, p. 558.

Ruth B. Russell and Jeannette E. Muther,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57, p. 862.

(17) Sydney D.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1962, p. 80.

이 原則은 事務局의 職位가 各 加盟國에게 均等하게 配分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아니며, 혹은 다른 機械的인 配分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憲章에는 事務局이 오로 지 國際的인 特性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高度의 誠實性과 能率을 確保하여야 하며, 同時에 事務局이 “各 加盟國의 文化와 豐富한 經驗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各 加盟國은 “各己의 文化와 哲學을 갖고 서 事務局을 위하여 寄與하는데” 對하여 滿足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였다.⁽¹⁸⁾

즉 憲章 第101條 3項은 職員採用에 있어서 優先順位를 設置할 것을 模索하고 있다. 同條 3項 前段은 職員의 採用과 服務狀態를 決定하는 것을 考慮하여 高度의 能率과 能力 및 誠實性을 確保하여야 된다는 必要性을 強調하였으며, 後段은 職員採用에 있어서 可及의이면 地域的인 配慮에 依據하여 採用한다는 것이 重要함을 指摘한 것이다. 同條項은 模糊한 表現을 容認하지 않았다. 그러나 結局, 理論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職員採用面에서 要望되는 基準은 全職員에 對하여 廣範圍한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의한 採用은 困難할 것이다. 이와 같은 採用原則의 適用은 事實上 特別한 用語分野를 必要로 하는 職位에 對하여서는 適用되기가 힘든 것이다. 다른 面에서는 地域的인 要素 속에는 “能率” 혹은 “能力”이라는 形式이 있는 것이다. 健全한 行政은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拘礙되지 않고 地域的인 委員團 (regional commission)에 있어서는 關聯된 地域內에서 可能하면 職員採用에 있어서 現地採用에 높은 比率을 둔다는 것이 要望되고 있는 것이다.⁽¹⁹⁾

國際聯合事務局이 처음 組織되었을 때에 職員採用面에서는 地域的인 配分의 原則은 適用되지 않고 無視되었다. 즉 1946年 4月 부터 9月 사이에 事務局職員은 350名으로 부터 3,000名으로 增加되었다.⁽²⁰⁾ 事務局의 職員은 大部分이 美國・「카나다」 및 西歐諸國의 國籍所有者에 의하여 充當되었다. 職員採用의 不合理한 樣相은 加盟國政府에 의하여 短期間 徵用된 者이거나 臨時契約에 의하여 原加盟國의 國籍所有者를 採用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地域的인 配分面에서 均衡을 잊은 事務局의 構成이었다.⁽²¹⁾ 이러한 急作스러운 職員採用은 國際聯合이 이미 機能的으로 準備되어 課業이 進行되므로써, 그러한 必要性에 의하여 不得已한 措置이기도 하였다.

初代事務總長은 事務局內의 高位職位任命候補者 選拔을 做는데 加盟國政府의 圓滑한 協調

(18) GAOR: 3rd Sess., *Annexes*, Agenda item 40, A/652, 2 Sept. 1948, para. 4.

(19)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op. cit.*, p. 81.

Walter R. Sharp, *Field Administration in the U.N. System*,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1, pp. 136-137, 141.

(20) Trygve Lie, *In the Cause of Peace*, Macmillan Co., New York, 1954, pp. 53-54.

Peter Lengyel, "Som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International Org.*, Vol. XIII, No. 4, Autumn 1959, p. 521.

(21)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Summer 1962, *op. cit.*, p. 467.

를 얻지 못하였는데 關하여 不滿을 表示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強大國에게 高位職位의 割當에 의한高位職任命은 事務總長任期 5年間에 限하여 適用되는 것이라고 「리」氏는 看做하였다.⁽²²⁾ 즉 事務局에서는 처음 8名의 事務總長補職位中 5名은 歐羅巴人이 차지하였으며, 歐羅巴 및 北美의 國籍所有者는 職業的인 專門職位에도 壓倒的인 多數가 採用되어 있었다.⁽²³⁾

國際聯合總會 第1次會期 前半期 會議에서는 憲章 第101條 3項을 效率的으로 適用하기 위한 決議를 採擇하고, “國際聯合 事務總長이 專門機構와의 關係를 緊密히 하기 위하여 專門機構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國際公務員委員會(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를 設置하도록 하는 한편, 事務局의 職員採用方法과 專門機構에서의 職員採用에 關한 共通基準을 設定하도록 要望”하였다.⁽²⁴⁾

第2次 總會에서는 事務局 職員構成의 不均衡面⁽²⁵⁾에 關하여 審議하고, “可能한 限 事務局의 모든 職位와 等級에 있어서 國際的으로 採用함에 있어서 廣範圍한 地域的인 配分에 의하여 職員을 採用하는” 重要性을 強調하는 決議를 採擇하였다. 同決議에서 事務總長에게 “現在의 地域的인 職員配分”을 增進시킬 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하였다.⁽²⁶⁾

第3次 總會에 報告書를 提出한 「리」 事務總長은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對한 概念에 關하여, “基本의 地域의 配分의 原則은 特別한 國家의 國民을 特定한 等級에 細目으로 그 數爻를 定하는 것이 아니며, 事務局의 行政은 각 加盟國의 豐富한 經驗과 文化를 驅使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그 自體의 文化와 哲學이 事務局의 課業에서 充分히 寄與할 수 있도록 滿足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²⁷⁾

「리」 事務總長의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概念과 그것을 履行하기 위한 伸縮性 있는 事務總長의 方式은 두가지 原則을 適用하는 合理的인 方便으로서 受諾되었다. 그後 事務總長과 人事局(Offiee of Personnel)의 보다 좋은 地域的 配分을 成就시키려는 繼續的인 努力은 成功的이 있으며, 그것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停頓狀態에 緣由한 加盟國의 新規 加入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事務局은 比較的 安定된 原因이었다.⁽²⁸⁾

1955年 이와 같은 停頓狀態는 緩和되고 新規 加盟國이 多數 實質的으로 國際聯合에 加入

(22) Lie, *In the Cause of Peace*, c̄. cit., p. 46.

(23) Lengyel, "Som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Int'l Org.*, Vol. XIII, No. 4, Autumn 1959, op. cit., p. 521.

(24)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of the First Part of the First Session....., Plenary Meetings.....*, p. 61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YBUN), 1946—1947, p. 85.

(25) YBUN, 1948—1949, p. 910.

(26)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3 (II), November 15, 1947.
YBUN, 1947—1948, c̄. cit., p. 179.

(27) Document A/652, Annex I (GB/77).

(28)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Summer 1962, op. cit., p. 468.

되므로서, 新規加盟國들은 事務總長에 對하여 自國의 國籍所有者의 採用을 위한 地域的인 配分原則이 適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主張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5年 12月 國際聯合에는 16個國의 加入問題⁽²⁹⁾에 이어, 第10次 總會 끝에 事務局의 職員의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均衡 잡힌 職員構成問題가 提起되어, 再次 第11次 總會에서 再論키로 決定하였다. 第11次 總會에서는 同地域的配分問題는 第12次 總會의 臨時議題속에 分離된 議題項目으로 包含시킬 것을 決議 1097(XI)로 採擇하였다.⁽³⁰⁾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關하여 備給審查委員會(the Salary Review Committee)에 의하여 指摘된 바를 보면 다음과 같다.

“憲章 101條의 2項에 關하여서는 그 目的이 國際聯合事務局은 여러 國籍所有者의 採用을 考慮하는 것이 아니라, 有能한 人材가 다른 背景, 다른 慣習, 다른 文化 및 다른 心理的 및 感情的인 反應을 갖는 職員을 確保하려는 것이고, 그와 같은 廣範圍한 國際事務局의 여러 가지 經驗의 標本이 없이는 憲章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하지는 못할 것”⁽³¹⁾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그 當時 新規로 加入한 大部分의 加盟國은 西歐陣營에 屬하는 國家이거나 혹은 最少限 國際公務員制度의 西歐的인 概念을 受諾하는 國家들이었다. 共產國家들은 이 地域的인 配分制度에 對하여挑戰할 意思가 없었거나 혹은 「아프리카」諸國의 國民感情이 그 問題를 다룰 立場에 놓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1960年에는 多數 加盟國家가 事務局職員의 地域的인 配分問題에 關한 關心을 갖고 審議하는 態度로 갑자기 轉換케 되었다. 가장 重要한 討議의 對象이 된 것은 事務總長의 役割問題에 關한 것이었다. 즉 1956年的 國際聯合非常軍(U.N. Emergency Force: UNEF)의 設置 및 1960年 9月의 「콩고」 經驗 等으로 因한 事務總長의 役割의 重要性에 立脚하여, 蘇聯政府는 事務總長의 獨立된 影響力과 事務局職員의 減員 等을 強調하기에 이르렀다. 「트로이카」(troika : 3頭馬車) 提案으로 單一 事務總長 代身에 3名의 委員으로 代置하여 事務總長室을 直接 統率하자는 主張이었다. 同時に 事務局의 構成原則을 「트로이카」式 原則에 의하여 適用할 것을 要請하였다. 이것은 事務局의 全般的인 性格을 變更시킬 것을 要望하는 것으로 國際公務員制度 代身에 國家公務員制度의in 性格으로 變更시키려는 것이었다.⁽³²⁾

蘇聯側의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의 概念은 “國際聯合事務局은 國際的인 機關이”라는 것인

(2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95(X).

(30)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Supp. No. 2, Vol. I, 1963, p. 497.

(31) G.A. (XI), *Annexes*, Vol. II, a.i. 51, A/3209, Chap. V, para. 35.
Repertory....., ibid., p 497.

(32) Alexander Dallin, *The Soviet Union at the United Nations*,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2, p. 153.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op. cit., p. 469.

事實이어야 하고, 그것은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位에 職員을 充當시킬 必要性이 있으며, 그와 같은 職員採用은 臨時契約에 의하여 採用되어야 한다. 이러한 方法은 다만 事務局에 새로운 劢力を 流入시킬 必要性을 確保하게 될 것이며, 事務局과 加盟國間의 繼續的인 接觸과 여러가지 政治的인 趨勢와 社會的인 制度에 對한 相互作用을 하게 될 것”⁽³³⁾ 이라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要旨는 事務局職員이 技術的인 能力を 所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함을 否定하지는 않으며, 國際公務員의 永久職任命을 否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實質적으로는 廣範圍한 地域的인 配分原則이 第1次의으로는 職員의 採用에 考慮되어야 하고, 그 狀態는 事務局이 國際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데 關하여 滿足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事務局의 構成이 主要한 理念의 「그룹」間에 現存하는 勢力關係를 反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憲章 規定의 偏見이 없는 用語에 對한 過去에 受諾된 概念과는 根本의in 差異가 있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事實은 근 20個國에 達하는 「아프리카」新生諸國의 國際聯合의 加入에 따르는 問題이다. 이러한 新生國家들은 아직도 植民主義에 對한 反感이 強하며, 때로는 西歐의 影響力에 젖은바 있었던 것으로, 그들의 獨立에 對한 承認을 要望하는데 조마심하여 온 國家들이 있다. 그들은 國家의 平等과 國家威信을 喝望하였으며, 國際機構의 課業에 均等하게 參與하는 主張이 全幅의으로 여러 加盟國에 의하여 受諾될 것과 그와 같은 位置에 早速히 오를 수 있는 것을 希求하였다. 그와 같은 热望은 國際聯合의 政治的인 機關일 뿐 만 아니라, 事務局에 있어서도 그들은 要望하였다. 「아프리카」諸國이 獨立國으로서 承認받기를 願하는 것은 事務局에 參與하는 國家別「취터」가 財政的인 分擔金 納付에 依據한 方便이라는데 關하여 非難할 뿐 아니라, 憲章 第101條 3項의 解釋에 있어서, 西歐의in 基準에 의한 能率, 能力 等에 關하여도 挑戰하면서, 早速히 廣範圍한 地域的인 配分을 達成할 것을 要望하였다.⁽³⁴⁾ 實은 蘇聯이 職員採用面에 있어서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을 그들의 欲望과 抱負를 反映하는 特別한 目的을 지니었다. 즉 蘇聯은 國際聯合이 西歐勢力 間의 結託에 의하여 事務局의 職員採用이 左右되어 있으므로 蘇聯出身 및 中立諸國의 職員이 冷待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不平하였다. 蘇聯은 國際聯合 事務局에서 非西歐의in 職員이 多數 採用되지 못하였다고 強調하면서, 이들 國籍所有者가 보다 많이 採用될 것을 要望하고 있다.⁽³⁵⁾

그러나 参된 國際聯合 事務局의 維持를 위한 要望과 憲章 自體가 바라고 있는 事務局內의 職位의 配分이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을 要望하고 있는 것과는 何等 背馳되는

(33) *Review of the Activities and Organization of the Secretariat,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Doc. A/4776, June 14, 1961, para. 48.

(34) Goodrich, *op. cit.*, p. 470.

(35) Dallin, *The Soviet Union at the United Nations*, *op. cit.*, pp. 163—164.

바 없다는 것은 故「함마슬드」事務總長이 指摘한 바를 보아도 알 수 있다.⁽³⁶⁾ 그것은 事務局의 絶對的인 國際的 特性을 維持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地域의 各種 職位의 均衡 있는 配分을 成就하기 위한 構成인 것을 正確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傾向과 理念의 均衡 있는 代表를 뜻하는 根本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萬一 事實上 그와 같은 傾向의 實質의 代表가 考慮될 것이 要望된다면, 그것은 事務局의 如何한 職位·等級 内의 政治的인 代表의 어떠한 假定 없이 成就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地域의in 基準에 依據한 職位의 滿足스러운 配分에 의하여 可能하다는 것이다.⁽³⁷⁾

이와 같이 國際公務員인 事務局職員은 各國의 國籍所有者로서 普通 어떠한 比率에 依據하여 構成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所謂 “地域의in 配分”⁽³⁸⁾이라는 問題로서 每年 國際聯合總會에서 論難되는 것이다.

2. “地域의in 配分”에 關한 論難點

1947年 9月 第2次 國際聯合 總會의 第5委員會에서는 事務局職員의 “地域의in 配分”에 關한 問題를 議題로 上程하여 論議하였다. 「브라질」代表는 全般的인 行政面에서 職員採用에 있어서 的 地域의in 配分原則이 圓滑하게 適用되어 있지 않다고 指摘하고, 事務局의 어떠한 「그룹」은 行政的인 能率과 能力を 強調하는 見地에서 特定한 地域 및 國家의 出身人士를 過重하게 採用하였다고 非難하였다. 同 代表는 “어떤 國家는 그들의 寄附金納付面을 考慮하

(36) Wilder Foote, ed., *Servant of Peace: A Selection of the Speeches and Statements of Dag Hammarskjold,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953—1961*,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62, p. 368.

(37) *Ibid.*, p. 368.

(38) Walter R. Crocker, "Some Notes o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nt'l Org.*, Vol. IV, No. 4, November 1950, p. 601.

Lengyel, "Some Trends in the Int'l Civil Service," *Int'l Org.*, Vol. XIII, No. 4, Autumn 1959, *op. cit.*, p. 521.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Summer 1962, *op. cit.*, p. 470.

"Issues before the Seven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pp. 176—182.

"Issues before the Eigh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pp. 183—184.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6 June, 1960—15 June, 1961,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ixteenth Session, Supp. No. 1(A/4800), 1961, p. 177. *Annual Report....., 16 June, 1962—15 June, 1963, GAOR: Seventeenth Sess., Supp. No. 1(A/5201), 1962*, pp. 180—181.

Annual Report....., 16 June, 1962—15 June, 1963, GAOR: Eighteenth Sess., Supp., No. 1(A/5501), 1963, p. 150.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Supp. No. 2, Vol. I, 1963, op. cit., pp. 497—500.

여 보면, 採用可能數에 未達한 國家와 採用可能數를 過大하게 超過한 國家가 있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그와 같은 採用計劃의 結果는 크게 失望하였다고 밝혔다.⁽³⁹⁾ 1947年 1月 1日 부터 同年 7月 31日 까지 新規 採用者의 多數는 採用可能數를 過大하게 超過한 國家들의 國籍所有者들이 大部分이었다.

「브라질」代表는 地域的인 配分의 不均衡한 狀態를 非難하면서, 이의 是正策으로서, (i) 職員의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採用은 合意된 基準에 依據하여야 되며, 보다 좋은 方便이 없는 境遇에는 각 加盟國의 財政的인 寄附金納付의 規模에 따라 基準을 세워야 될 것. (ii) 人事局(the Bureau of Personnel)은 各部의 長과 密接한 關係를 가져야 하며, 人事局의 選拔委員會에 의하여 提出된 採用候補者的 申請書에 對한 分析은 候補者的 所屬國家의 「쿼터」에 依據하여 指摘되어야 한다. (iii) 人士의 資格樣式을 接受하면 人事局은 採用未達國家內에서 候補者的 均等한 資格을 所有하고 있는 興否를 確認하여야 한다. (iv) 事務局의 國際性에 關한 進涉에 對하여 週期的인 報告를 行政 및 豫算問題擔當諮詢委員會에 提出할 것과 이에 關한 全般的인 報告를 第3次 總會에 提出할 것을 要請하였다.⁽⁴⁰⁾

이와 같은 「브라질」의 主張은 多數國家의 支持를 받았다.⁽⁴¹⁾ 이들 諸國은 그들의 國籍所有者가 事務局 職員으로 採用可能數에 未達되고 있다는 不平 들이었다.

「콜럼비아」代表는 決議案(A/C. 5/W. 28)을 提出하고, 同 決議案이 採擇된 後 60日 以內에 事務總長은 憲章의 職員採用의 定義를 包含한 規程을 制定하여, 各 加盟國의 寄附金納付에 依據한 「쿼터」制度를 마련하고, 各 加盟國의 最少 「쿼터」는 3名의 職員을 採用하도록 促求하는 案이다. 「콜럼비아」代表는 職員採用에 있어서 事務總長이 다음 原則에 따라야 된다는 點을 提議하였다.

(i) 職員採用은 職員의 地域的 配分에 依據한 等級과 數를 增進시키도록 할 것.
(ii) 新設되는 職位 혹은 空席을 채우는데에 있어서 事務總長은 採用未達인 加盟國에 限하여 採用하도록 할 것. 萬一 그와 같은 採用未達인 國家에 資格을 具備한 候補者が 없는 境遇에는 同 採用은 採用可能數를 超過한 國家의 國籍所有者를 臨時職으로 採用하도록 할 것.⁽⁴²⁾

그러나 이와 같은 「콜럼비아」의 提案에 對하여 몇 나라가 反對하였다. 同 反對主張은, (i) 職員採用에 있어서는 候補者的 能力과 能率에 依據하여야 되며, 事務局의 國際的인 特性은 正確한 數學的인 方案에 의하여 確保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ii) 職員은

(39) YBUN, 1947—1948, *op. cit.*, p. 178.

(40) *Ibid.*, p. 178.

(41) Turkey, Mexico, Uruguay, U.S.S.R., Argentine, Panama, Chile, Syria, Pakistan, Lebanon, India 및 Philippines 등 諸國은 「브라질」의 地域的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에 關한 主張을 支持하였다.

(42) YBUN, 1947—1948, *op. cit.*, p. 179.

더욱이 그들 國家의 政府를 代表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公務員인 것이다. 그것은 加盟國의 寄附金納付 問題와 職員을 採用하는 比率 關係는 滿足스러운 實質的인 것은 못되는 것이다. (iii) 「워터」制度는 例를 들면, 戰爭으로 荒廢化 된 國家의 寄附金納付 比率이 抵率이라하여, 職員採用을 制限한다는 것은 不適當한 것이다. 寄附金納付 規模의 比率은 變更할 수 있는 것이다. (vi) 總會는 事務局의 能率을 增進시키기 위해 事務總長의 自由스러운 行動을 制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⁴³⁾

1947年 11月 7日 第5委員會 91次 會議에서 「콜럼비아」 提案은 賛成 19, 反對 20, 廉權 7로써 否決되었다. 第5委員會에서는妥協案⁽⁴⁴⁾(A/C. 5/W. 40)을 審議하였는데, 同案에 對하여 몇 가지 修正案이 提案되었다.⁽⁴⁵⁾

第5委員會의 91次 및 92次 會議에서妥協案과 修正案 등은 共同提案의 名義로서 採擇되어 總會에 附議되었는데, 同年 11月 15日 總會 第115次 全體會議에서는 第5委員會의 建議案을 決議 153(Ⅱ)로써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⁴⁶⁾

同 決議의 要旨는, (i) 事務局職員의 構成에 있어서 均等한 地域의in 配分을 이룩하도록 하고, 現在의 配分을 增進시키도록 하며, (ii) 이와 같은 地域의 配分問題인 憲章 第101條 3項은 職員의 高度의 能率, 能力 및 誠實性을 確保하는 必要性과는 相衝되지 않는다. (iii) 國際의in 特性이라는 見地에서 事務局의 行政的in 方法과 政策, 各 加盟國 國民의 慣例 등의 差異面 등 加盟國의 技術的in 能力과 各種 文化面을 反映하여야 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總會는 첫째로, 事務局職員의 高度의 能率, 能力 및 誠實性을 確保하는 것과 同時に 可能하면 廣範한 地域의in 配分에 依據하여 職員을 採用할 것을 再確認한다.

둘째로, 事務總長에 다음 事項을 要請한다. (i) 事務局內의 各部의 職位에 對한 現行의 地域의 配分原則의 增進을 위한 採用政策을 再審할 것. (ii) 可能하면 事務局에 그들의 國籍所有者가 採用되지 못한 國民을 採用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 (iii) 行政 및 豐算問題諮詢委員會의 勸告에 依據하여 現 事務局職員의 資格, 經歷 등을 再審하여 憲章에 規定되어 있는 最高의 水準에 未達인 職員은 審查하여 代置하도록 할 것. (iv) 現 事務局職員의 地域의in 配分을 增進시킬 것을 確保하기 위한 모든 可能한 措置를 取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는 憲章과 本決議에 依據하여 必要한 規程 및 規則을 包含할 것. (v) 이 決議에 依據하여 取하여진 措置를 次期 定期總會에 報告할 것⁽⁴⁷⁾ 등을 決議하였다.

(43) *Ibid.*, p. 179.

Norway, Poland, Czechoslovakia, France, Belgium, Canada 및 Netherlands는 Columbia 提案을 反對하였다.

(44) *Ibid.*, p. 179. 同妥協案은 Argentina, Canada, Mexico 및 美國代表들에 의하여 提案되었다.

(45) U.S.S.R., France, Belgium 및 Lebanon 代表의 提案.

(46) YBUN, 1947—1948, *op. cit.*, p. 179.

1949年 12月末 現在 國際聯合 加盟國數는 59個國이며, 事務局 職員은 4,166名으로 55個國의 國籍을 지닌 職員으로 構成되었다.⁽⁴⁸⁾ 그後 事務局職員에 對한 地域的인 配分問題는 1955年 12月 第10次 總會에서 新規로 16個國이 加入되므로써,⁽⁴⁹⁾ 또다시 第11次 總會에서 再論되었다. 第11次 總會에서는 第12次 總會의 臨時議題로 同問題를 別途 插入할 것을 決定하였다.⁽⁵⁰⁾

즉 16個國이 새로 國際聯合에 加入되었으나, 事務局의 職員 採用可能數는 如前이 制限되어 있다.⁽⁵¹⁾ 그러나 國際聯合事務局은 1956年 8月末 現在 4,199名中 加盟國中에서 64個國과 非加盟國中에서 2個國의 國籍所有者가 採用 되었으며, 1,163名이 國際的으로 採用되는 範疇에 屬하는 職員들이었다. 그리고 32個國의 國籍을 가진 職員 483名이 用語分野에 屬하는 範疇로서, 이들은 地域的인 配分原則에는 包含되지 않는 것이다. 現地에서 採用되는 範疇에 屬한 本部에 勤務하는 一般職(General Service)의 職員 2,000餘名은 57個國의 國籍을 가진 者들이었다. 事務總長은 그의 主張이 事實上 加盟國으로 부터 全幅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것으로 確信하였다. 그러나 事務總長은 可能한 限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을 擴大하기 위한 機會를 繼續 取할 것을 피하였다.⁽⁵²⁾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關하여 備給審查委員會(the Salary Review Committee)에서는 憲章 第101條 2項에 對하여, “그目的의 國際的 事務局의 職位가 여러가지 國籍을 가진 者를 參酌할 뿐 아니라, 國際的 事務局이 여러가지 背景을反映하고 能力 있는 者를 包含하며, 다른 慣習과 文明및 다른 心理的·感情的인 反應을 包含하고 있으며, 國際的 事務局이 그와 같은 廣範한 여러 經驗의 標本 없이는 憲章의 目的을 履行할 수는 없다”라고 指摘하였다.⁽⁵³⁾ 특히 人事局의 先任職員(principal officer)은 “心理的 및 感情的으로 다른面”을 갖는 여러 文化 등을 反映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事務局의 專門職位(professional posts)에 대한 充員은 어느 國家에 있어서는 資格을

(47) *Ibid.*, p. 179, 812—813.

1948年 現在의 65個 加盟國中 59個國의 國籍을 지닌 職員이 採用되어 있다. 地域的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은 全體가 1,198名이며 그 中 「뉴욕」에는 979名, 歐羅巴事務局에 153名, 公報「센티」에 28名, ECAFE에 12名, ECL, A에 9名, 社會·福祉計劃을 위한 諮問計劃에 17名으로 되어 있다.

(48) YBUN, 1950, p. 4. YBUN, 1951, p. 2.

1950年 12月末 現在로 加盟國은 60個國으로, 事務局의 定規職員은 3,326名이며, 499名은 短期間으로 契約을 맺었고, 61個國의 國籍을 지닌 者로 構成되고, 加盟國中에서 55個國의 國籍을 가진 者가 採用되었다.

(49) G.A. Resolution 995(X). YBUN, 1955, p. 27.

(50) G.A. Resolution 1097 (XI).

(51) ORGA: Eleventh Sess., *Fifth Committee*, 1956—1957, p. 181, para. 1.

(52) *Ibid.*, pp. 181—182, para. 7.

(53) G.A. (XI), *Annexes*, Vol. II, a.i. 51, A/3209, Chap. V, para. 35.

ORGА: Eleventh Sess., *Fifth Committee*, *ibid.*, p. 183, para. 21.

갖춘 候補者의 不足을 들 수 있다.⁽⁵⁴⁾ 加盟國中 어느 國家代表는 地域의in 配分原則을 要하는 專門職位에 美國市民이 超過 採用되었다는 非難을 했던 때도 있었다. 實質的으로 美國의 國籍所有者는 專門職位에 27.52 「퍼센트」의 比率을 占하였는데, 그것은 美國의 財政負擔의 分擔率 보다는 下迴하는 率이었다. 美國代表 들은 美國市民이 國際聯合에 의하여 設定된 高度의 基準에 適格된 것임을 自負하는 것이 있으며, 그들이 事務局을 위하여 가장 有益한 寄與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確信하고 있다.⁽⁵⁵⁾

그런데 大部分의 後進國은 適格한 候補者的 基準에 對한 有資格者數는 極少數이 었다. 그와 같은 國家에는 資格을 具備한 數는 적으며, 大部分의 後進 國家는 國內 工業 및 農業의 發展이 第 1 次的으로 至急하며 有能한 人材가 必要한 것이 었다.⁽⁵⁶⁾ 比律賓代表「알제트」(Alzate)는 “地域的 配分이라는 것은 오래된 問題로서, 오늘날 國際聯合의 加盟國數가 增加됨에 따라 더 우 많은 困難을 招來하게 되었다”고 指摘하면서, 이와 같은 困難을 打開하기 위하여서는 “職位의 配分에 不均衡을 是正하고 加盟國의 職員에 對한 昇進機會를 增加시키도록 하는 同時에 加盟國의 職員採用에 對하여는 ‘待機名單’(waiting list)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提案하였다.⁽⁵⁷⁾ 또한 「알제트」氏는 “國際聯合의 事務局의 民族, 皮膚色, 主義 등 觀點에서 絶對로 影響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나, 그러나 事務局에서는 그러한 點에서 影響을 받은 바가 若干 있는 것이 遺憾된 일”이라고 指摘하였다.⁽⁵⁸⁾

蘇聯代表「체체트킨」(Chechetkin)은 “蘇聯의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며, 國際聯合의 分擔金 納付比率이 甚麼도 不拘하고, 蘇聯國籍所有의 事務局職員은 不過 2 「퍼센트」以下로서 그것은 非加盟國인 瑞西와 同率이 되며, 局長級範疇(the Director Category)에 있어서는 「캐나다」 및 瑞典은 蘇聯보다 倍 以上을 차지하였는데, 그外의 加盟國도 類似한 狀態이다”라고 地域的 配分의 不均衡한 點을 非難하였다.⁽⁵⁹⁾ 「ペ루」代表도 “事務局의 職員採用이 地域的in 配分面에 均衡을 잃고 있다”고 指摘하였으며,⁽⁶⁰⁾ 「벨지움」代表도 “高位職位에 對한 「벨지움」出身의 職員採用은 不滿足스럽다”고 밝혔다.⁽⁶¹⁾

結局 第 11 次 總會에서는 第 5 委員會에서 提案한 두가지 決議案을 上程 審議하였다.

첫째는, 「파나마」·「ペ루」·「스페인」 및 「베네수엘라」에 의하여 提案된 것으로⁽⁶²⁾, “事務

(54) ORGA:, *ibid.*, p. 184, para. 29.

(55) *Ibid.*, p. 184, para. 33.

(56) *Ibid.*, p. 185, para. 39.

(57) *Ibid.*, p. 185, para. 49.

(58) *Ibid.*, para. 52.

(59) *Ibid.*, p. 187, para. 66.

(60) *Ibid.*, p. 189, para. 4. 1957 年 1 月 14 日 第 5 委員會 564 次 會議.

(61) *Ibid.*, p. 189, para. 6. Ceylon 代表도 不滿을 表明하였다. *Ibid.*, para., 11, 12.

(62) GA (XI), Annexes, Vol. I, a. i. 43, p. 84. A/C.5/L. 434.

總長은 職員採用에 있어서, 加盟國中에서 採用未達된 國籍所有者와 아직 採用 되지 못한 國籍所有者를 優先權을 賦與하여 採用할 것”을 勸告하는 同時에, “昇進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原則을 適用할 것”을 要請하였다.⁽⁶³⁾

둘째번 勸告案은, 「아프카니스탄」 外에 14 個國의 提案으로, “將次의 國際聯合事務局의 모든 職位에 對한 職員의 採用과 昇進에 있어서는, 憲章 第 101 條 3 項의 規定에 依據하여 採用未達國家의 職員에 對한 아직껏 採用되지 못한 加盟國의 國籍所有者를 優先하여 採用하는 것과 昇進面에 配慮할 것”⁽⁶⁴⁾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었다.

加盟國의 어떤 代表들은 “地域的인 配分原則과 昇進關係”는 「링크」되어 있다는 見解를 披露하면서, 憲章 第 101 條 3 項에는 昇進에 關하여서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는 點을 밝히고, 그러므로 “地域的 配分의 原則은 職員의 昇進에도 反映되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였다.⁽⁶⁵⁾

이와 反對로 다른 加盟國의 代表들은 “地域的인 配分原則과 昇進間에는 아무 關聯이 없다”는 點을 指摘하고, “地域的인 配分은 昇進에 關하여서는 考慮될 것이 못되며, 다만 職員의 先任(seniority)과 實績에 依據하여야 된다”는 點을 主張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諸問題에 關하여 事務局의 人事局長 「로버트슨」(Robertson)氏는 “憲章과 國際聯合의 職員規則에 採用과 昇進을 區別하고 있으며; 事務局은 實質的으로 地域的인 配分原則은 採用에만 適用되는 것”임을 밝혔다.⁽⁶⁷⁾

여러 가지 見解表明이 있은 다음, 第 5 委員會에서는 實務團의 構成에 의하여 마련된 決議

(63) *Ibid.*, A/C. 5/L. 435.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Eleventh Sess., *op. cit.*, pp. 181—187.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Supp. No. 2, Vol. III, 1963, *op. cit.*, p. 497.

(64) *Ibid.*, A/C. 5/L. 435.

Afghanistan, Burma, Ceylon, Egypt, Ethiopia, India, Indonesia, Iran, Iraq, Nepal, Pakistan, Philippines, Saudi Arabia, Sudan 및 Yemen. *Repertory of Practice*....., *ibid.*, para. 15, pp. 497—498.

(65) *Repertory of Practice*..., *ibid.*, para. 16, p. 498. GA(XII), 5th Committee, *op. cit.*, 564th meeting, p. 187, para. 72. Peru의 Pareja Ypaz Soldan 代表의 主張과 para. 74.의 Egypt의 El-Messiri 代表가 主張하였다. para. 75. 結局 第 5 委員會委員長은 별 反對 없이 Canada, Guatemala, India, Netherlands, Pakistan, Peru, Romania, Spain 및 Syria 代表로써 地域的 配分의 決議草案을 準備하는 實務團을 構成키로 合意하였다.

GA(XII), 5th Committee, *op. cit.*, 629th meeting, 27 Nov. 1957, p. 149, para. 4.

比律賓의 Romulo 代表의 主張. 632nd meeting, 29 Nov. 1957, p. 172, para. 19.

Syria의 Tomeh 代表의 主張. GA(XIII), 5th Committee, *op. cit.*, 671st meeting, 29 Oct. 1958, paras. 6 및 19, p. 113. Ethiopia의 Mangasha 代表의 主張과 p. 115의 UAR의 El Messiri 代表의 主張 등을 엿볼 수 있다.

(66) GA(XII), 5th Committee, *ibid.*, 629th meeting, 27 Nov. 1957, p. 150, para. 13. Israel의 Liveran 代表의 主張과 p. 151, para. 18의 Ceylon의 Amerasinghe 代表의 主張을 엿볼 수 있다. 즉 國際聯合의 國際的 特性은 財政的인 分擔金의 負擔에 依據할 뿐 아니라, 事務局의 地域的인 職位의 配分을 여러 國籍所有者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GA(XIII), 5th Committee, *ibid.*, 671st meeting, 29 Oct. 1958, p. 114, para. 11. Ireland의 Keating 代表의 主張.

草案에서는 “昇進에 關하여 配慮한다”는 問題는 刪除되어, 第 5 委員會에서는 同實務團의 提案을 採擇하고,⁽⁶⁸⁾ 總會에서도 第 5 委員會 提案을 決議 1097(XI)로 採擇하였다.⁽⁶⁹⁾

第 12 次 總會 第 5 委員會에서는 事務總長의 報告(A/C. 5/718/Rev. 1)에 關한 “事務局職員의 地域의 配分” 問題는 各國代表로 부터 多은 論難을 받았다. 「이란」의 代表「카라프」(Khalaf)氏는 “憲章 第 101 條은 全體의 으로 適用되어야 하며, 地域의 配分原則은 下位職의 職位에 對하여서만 有效한 것이 아니라, 亦是 事務局의 高位職에게도 有效하여야 된다. 이에 附加하여 事務局의 101 個의 高位職位中 50 餘個의 職位는 5 個國 혹은 6 個國의 國家에게 配分되어, 結局 地域의 配分原則의 適用은 別로 改善된 바 없으며, 問題는 事務局의 協調에 의하여서 만 解消될 것이다. 그것은 事務局職員이 不適當하게 採用되었거나, 혹은 特히 어떤 加盟國은 事務局에 超過 採用된 結果로 오직 各 加盟國의 協調에 의하여서 만이 解消될 수 있을 뿐”이라고 強調하였다.⁽⁷⁰⁾ 特히 「이란」代表는 各 加盟國에게 “採用可能數(desirable range of posts)에 對하여 어떠한 基準이 適用될 것 인가에” 關하여 問議하면서, “寄附金의 負擔率에 의한 基準策定에는 反對할 것”임을 밝혔다.⁽⁷¹⁾ 「세이론」代表(Amerasinghe)는 “國際聯合의 國際의 配分의 特性이 財政의 基準이 負擔하는데 있어서 反映되는 것이 아니라, 事務局의 職位의 配分을 加盟國의 여려 國籍別로 配分하도록 反映되어야 한다”⁽⁷²⁾는 點을 強調하였다. 特히 國際의 配分의 特性이 要請되는 “事務局의 先任職(principal officer), 局長 및 事務次長級의 範疇中 50 「퍼센트」는 美·英 및 佛蘭西 등 3 個國에 의하여 充員되어 있으며, 이들은 政策樹立의 立場에 있는 重要한 職位에 있는 者 들”이다.⁽⁷³⁾ 日本代表 「우라베」(Urabe)氏는 “亞細亞·아프리카 및 南美諸國은 事務局의 採用可能數에 未達이며, 先任職 및 局長과 事務次長級의 範疇에 屬하는 101 個 職位中 但只 12 名만이 亞·阿諸國 出身이 며, 南美諸國은 7 名만이 採用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이와 같은 不均衡을 是正하여야 될 것임을 強調하였다.⁽⁷⁴⁾

(67) GA(XI), 5th Committee *ibid.*, 564 meeting, 10 Jan. 1957, p. 186, para. 61. 565th meeting, 14 Jan. 1957, p. 190, para. 15. GA(XII), 5th Committee, 630th meeting, 28 Nov. 1957, p. 160, para. 53. GA(XIII), 5th Committee, 671st meeting, 29 Oct. 1958, p. 110, para. 14. Acting Director of Personnel in McDiarmid의 說明과 GA(XIV), 5th Committee, 738th meeting, 5 Nov. 1959, p. 156, paras. 11, 12. GA(XV), Part I, 5th Committee, 790th meeting, pp. 175—176, paras. 42—47. GA(16), 5th Committee, 873rd meeting, 7 Nov. 1961, p. 145, para. 1. GA(XVII), 5th Committee, 959th meeting, 28 Nov. 1962, p. 264, paras. 8—11.

(68) GA(XI), *Annexes*, *op. cit.*, Vol. I, a.i. 43, p. 85, A/3550, para. 92.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Supp. No. 2, Vol. III, *op. cit.*, p. 498, para. 19, GA(XI), 5th Committee, 564th meeting, 14 Jan. 1957, p. 189, para. 2.

(69) *Repertory of Practice*....., *ibid.*, para. 19.

(70) GA(XII), 5th Committee, *op. cit.*, 629th meeting, 27 Nov. 1957, p. 150, para. 9.

(71) *Ibid.*, para. 10.

(72) *Ibid.*, p. 151, para. 18.

(73) *Ibid.*, para. 19.

(74) *Ibid.*, p. 153, paras. 32—33.

「풀랜드」代表 (Czarkowski)는 “地域의인 配分問題는 重要的한 것으로서, 1953年에는 事務局의 地域의인 配分이 適用되는 範疇를 보면 28.6「퍼센트」를 美國이, 13.56「퍼센트」는 英國이, 3.8「퍼센트」를 「카나다」가 各各 차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3個國이 43.16「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6.84「퍼센트」를 殘餘 79個國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英語使用國인 3個國이 82個國의 加盟國이 있는 國際聯合에 있어서 43「퍼센트」의 職位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類似한 地域의인 不均衡한 職員의 構成은 다른 專門機構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⁷⁵⁾ 「불가리아」代表 (Boev)는 “1957年 8月 31日 現在로 全 加盟國의 全體職員中, 新加盟國으로 부터는 50名이 採用되었는데 이들은 國際聯合의 全體經費에 對하여 5.84「퍼센트」를 負擔하고 있으며, 그들은 70名의 職位를 차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東歐諸國中 「알바니아」·「불가리아」·白露西亞·「루마니아」出身의 職員은 全無하며, 「체코슬라바키아」는 12名, 「헝가리」는 3名, 「풀랜드」는 19名, 蘇聯은 31名, 「유고슬라비아」는 6名으로 이들 諸國出身의 職員은 71名이 採用되고 있다. 이들 國家는 機構의 全體豫算中 20.9「퍼센트」를 負擔하는 것으로 그들의 國籍所有者가 最少 現 71名에 比하여 245名이 採用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⁷⁶⁾ 이에 比하여 다른 諸國은 採用可能數를 훨씬 超過하여 採用되어 있다. 그 예를 보면, 「벨자움」·和蘭 및 「눌웨이」는 69名이 採用되어 있으며, 그 것은 10個의 東歐諸國의 全體 採用된 職員數에 比等한 것으로서, 이들 3個國의 寄附金納付의 分擔率은 2.9「퍼센트」이며, 이 比率대로 하면 이들 3個國은 35名만이 採用되어야 하는 것이다. 同日字로 333名은 美國人이, 147名은 英國인이 차지하였으며, 이 兩國의 國籍所有者는 總計 480名으로서 事務局의 職位를 獨占하다 싶이 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⁷⁷⁾ 또한 蘇聯代表 「자르빈」(Zarubin)은 “地域의인 配分原則은 突章 第 101條 3項에 明記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原則은 잘 適用되지 못하였으며, 特히 高位職位는 亞細亞·「아프리카」·南美 및 東歐地域은 不滿足스러운 狀態로서 採用未達이며, 「아랍」諸國은 單一名도 採用된 바 없었다. 이 職位에 屬하는 25名은 美國의 國籍所有者가 차지하였으며, 全體의 3分의 1인 32名은 西歐羅巴에서 採用된 것이고, 全世界의 3分의 2의 人口를 차지하고 있는 亞細亞 및 「아프리카」諸國에서는 다만 11名 뿐이었다. 그리고 先任職位 및 局長級과 事務次長의 範疇에 屬하는 101名의 職位中 26名은 美國人, 14名은 英國人으로, 大略 高位職位의 過半數는 美·英兩國의 國籍所有者가 차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奇現象이 繼續 許容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局長級(D-1, D-2)의 職位 75個中 55個 職位는 美·「카나다」 등 西歐의 國籍所有者들로서 全體의 70「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南美諸國은 다만 3名 뿐이고, 1名은 中東地域

(75) *Ibid.*, p. 155, paras. 2-3.

(76) *Ibid.*, p. 156, para. 13.

(77) *Ibid.*, para. 14.

諸國과 1名은 南阿에서 採用된 것이다. 그中 61個國의 國籍所有者는 單 1名도 그와같은高位職位에는 採用된 바 없었다는 것은 高位職位에 對한 地域的인 配分이 不均衡을 이루었으며, 國際聯合의 普偏性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그와 같은 問題는 第13次 總會에 議題로 包含시킬 것을 提議하였다.⁽⁷⁸⁾ 埃及代表 (Ato Yawand-Wossen Mangasha)는 “986名의 專門職位中, 全體의 41[퍼센트]인 405名은 歐羅巴 國籍所有者이며, 26.3[퍼센트]인 260名은 北美, 9.8[퍼센트]인 97名은 南美, 亞細亞는 14.6[퍼센트]인 141名, 中·近東은 4[퍼센트]로 40名, 濟洲와 「뉴·질랜드」는 2.5[퍼센트]로 25名, 그리고 「아프리카」는 1.8[퍼센트]로 18名이 各各 차지하였다”는 點을 밝혔다.⁽⁷⁹⁾

1958年 10月 28日 總會 第5委員會 668次 會議에서 伊太利 代表 “마조리”(Majoli)氏는 事務總長의 報告(A/C. 5/750, A/C. 6/751 및 A/C. 5/L 508)에 對하여, “事務局職員의 地域的인 配分은 不均衡的이었고, 多數 國家는 採用可能數에 따라 採用되었으며, 어떤 國家는 超過 採用되었는가 하면, 어떤 國家는 採用可能數에 未達되어 있다. 1957年 9月 1日 부터 1958年 8月 31日 사이에 102名의 職員任命은 地域的인 配分原則面에서 보면 微弱한 發展이었으며, 그中 3分의 1의 任命은 그들 加盟國의 職員中 採用可能數에 超過한 國籍所有者를 採用한 것이고, 伊太利 國籍을 所有한 職員의 採用可能數는 20名乃至 34名인데도 不拘하고, 15名 만이 採用된 것이었다. 이 問題는 實質的인 것으로 事務總長은 總會 決議 1226(XII)에 따라 努力を 于先 傾注하여야 될 것”⁽⁸⁰⁾이라고 力說하였다. 「페루」代表인 「파레자」(Pareja)도 同期間中 南美出身은 11名이 任命되어, 全體 任命된 著中에서 보면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으나, 南美諸國은 全 加盟國 中 25[퍼센트]의 議席을 차지 하고 있다. 地域的인 配分原則이 下位職位에만 適用될 것이 아니라, 高位職位에 있어서도 適用되어야 한다”⁽⁸¹⁾고 指摘하였으며, 「스페인」代表의 「드·피니이에스」(De Pinies)氏는 “高位職位의 採用도 採用未達國家 또는 採用되지 않은 國家로 부터 採用되어야 한다”⁽⁸²⁾는 點을 強調하였다. 蘇聯代表 「列維奇金」(Levychkin)은 “憲章 第101條 3項의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은 高度의 能率, 能力 및 誠實性과 同等하게 重要한 것이다. 實質적으로는 事務局은 職員의 能率, 能力 및 國際性을 強調함으로써, 모든 地域의 職員을 代表한다는 原則의 適用을 等閑視하는 傾向이 있다. 前會期에서도 各國代表는 地域的인 配分原則이 圓滑히 適用되지 못한 바를 指摘한 바 있었으나, 아직 同原則과 實行은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事務總長의 報告(A/C. 5/L. 608)를 보면 事務局의 地域的인 配分을 要하는 職員中 58[퍼센트]는 美國市民이며, 63

(78) *Ibid.*, p. 157, paras. 16—20.

(79) *Ibid.*, p. 174, paras. 36—37.

(80) ORGA, 13th Sess., 5th Committee, 1958, *op. cit.*, pp. 99—100, para. 7.

(81) *Ibid.*, p. 100, paras. 11—12.

(82) *Ibid.*, para. 13.

「퍼센트」以上이 北大西洋同盟條約機構(NATO) 아니면, 東南亞條約機構(SEATO) 등 政治 및 軍事的인 「堡壘」에 加擔한 國家의 國籍所有者 들이다”⁽⁸³⁾라고 非難하였다. 美國代表 「벤더」(Bender)氏는 “57「퍼센트」를 美國市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地域的인 配分의 適用을 받지 않는 一般職範疇(General Service Staff)에 屬하는 者들 까지를 包含한 것이며, 一般職의 職員은 現地에서 採用된 者들이고, 專門職位範疇에 屬하는 美國市民은 27「퍼센트」에 不過하며, 美國은 國際聯合豫算中 32.51「퍼센트」를 負擔하고 있다”⁽⁸⁴⁾는 點을 指摘하면서 蘇聯側의 主張을 反駁하였다.

人事局長署理 「맥코디알미드」(McDiarmid)氏는 “經歷職의 職員은 全體의 84「퍼센트」로서 地域的 配分 原則의 急進的인 發展은 不可能하다는 것이 明白한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그럼에도 不拘하고 事務總長은 12次 總會時의 報告에서 事務局은 加盟國 81個國中 66個國의 國籍所有者로서 構成되었었다. 現年度의 報告에서는 81個國中 70個國의 國籍所有者가 採用되었으며, 最初로 「엘살바돌」·「가나」·「라이베리아」·「모록코」 및 「수단」등의 國籍所有者가 採用되었다고 밝히고 “事務總長이 地域的인 配分原則에 依據한 採用을 改善하려고 努力하나, 그와 같은 均衡이 加盟國에서 受諾되는 與否가 疑心스러운 點이 許多하다”고 말하면서, 職員採用에 多은 隘路가 있었음을 밝혔다.⁽⁸⁵⁾

埃及代表 「맨가샤」(Mangasha) 代表는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이 큰 進展을 못본 것을 遺憾된 일이라고 指摘하였다.⁽⁸⁶⁾ 同代表는 “高位職位 105名中 「아프리카」出身으로는 2名이 南阿出身이고, 1名이 「수단」出身이며, 1,133名의 下位職位中 1.2「퍼센트」가 「아프리카」出身의 採用된 比率이고, 그 15名 職位中 11名은 南阿出身이며, 「가나」·「라이베리아」·「모록코」 및 埃及出身의 각각 1名씩 採用된 것 뿐이다. 그 외는 採用可能數에 超過한 國家의 國籍所有者가 採用된 實情”이라고 指摘하였다.

한편 人事局長 “하밀頓」(Hamilton)氏는 1959年 11月 5日 第5委員會에서 國際聯合의 事務局은 “加盟國 82個國中 73個國의 國籍所有者가 採用되어 있으며, 東歐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地域的 配分에 의하여 採用되고 있다”⁽⁸⁷⁾고 말하였다.

(83) *Ibid.*, p. 101, paras. 18—19.

(84) *Ibid.*, p. 102, para. 26.

(85) *Ibid.*, p. 103, paras. 35—44.

(86) *Ibid.*, p. 107, 29 Oct. 1958, 5th Committee, 670th meeting, paras. 1—3. 事務總長의 報告 (A/C. 5/750)에 의한 高位職位 105個에 對한 地域的配分狀況은 다음과 같다.

北	美…29%	西	歐…33%	
亞	細	亞…13%	東	歐…11%
中	近	東…1%	아프리카…3%	未滿

이러한 埃及側主張은 Iraq의 Alwan 代表를 비롯한 Liberia 代表, Ghana 代表 등 「아프리카」諸國代表의 強力한 支持를 받았다.

(87) ORGA: 14th Sess., 5th Committee, 1959, p. 155, paras. 3—4.

「우크라이나」代表는 “地域의 配分에 의한 事務局의 職員採用은 不滿足스러운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東歐 諸國은 職員採用面에서 特히 不利한 立場에 있으며, 採用可能數는 31[퍼센트]이나 東歐에서는 68名이 採用되었는데, 그것은 全職員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職員中高位職位의 66[퍼센트]以上이 西歐 및 北美出身에 의하여 차지되어 있다고 非難하였다.⁽⁸⁸⁾

이와 같은 論難點에 對하여 國際聯合 人事局長인 「하밀頓」氏는 “採用”未達 加盟國으로부터 採用을 希望한 者들의 要望은 受諾되지 못하였다. 過去 5個年 間의 採用된 全職員의 4分의 3은 「아프리카」·亞細亞 및 極東·東歐·南美·中·近東 및 西歐의 新生國으로부터 採用되었다. 同期間中 局長級(D-1) 以上 職位에 任命된 32名中, 24名은 繼續 國際聯合에 勤務하고 있으며, 이들은 16個國의 國籍이 다른 職員들로 構成되었다. 地域의 配分에 의한 採用을 滿足스럽게 하지 못하는 隘路點은 事務局職員의 空席은 大部分이 特別한 資格의 具備를 要하는 것이 있다”⁽⁸⁹⁾는 點을 強調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代表 「나크바락」(Nacvalac)은 “事務局職員의 採用이 地域의 配分이 不均衡的이며, 專門職位 및 高位職位의 1,168名中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國家의 市民은 864名이 採用되어 있으며, 이것은 同範疇에 屬하는 職員數의 3分의 2以上이 된다. 中立諸國出身은 220名이 採用되었으며, 社會主義諸國出身은 84名이 採用되었다. 局長及 以上的 範疇에 屬하는 高位職位의 3分의 2와 5分의 4는 美國과 同盟關係에 있는 國民으로서 採用되어 있으며, 特히 重要한 事務局의 部(departments) 및 課(divisions)의 境遇에는 더욱 더 하다”는 것을 指摘하면서,⁽⁹⁰⁾ “「체코슬로바키아」國籍所有者 30名이 事務局職員을 志望하였으며, 이들의 大部分은 外交官의 經歷을 갖인 者들이 었으나, 그들中 單1名도 採用되지 못하였다”⁽⁹¹⁾는 點을 強調하면서 採用面의 不公平性을 非難하였다.

이와 같은 共產側 諸國의 非難에 對하여 美國代表 「에이肯」(Aiken)氏는, “國際의 範疇에 의한 美國의 國籍을 갖인 職員의 採用은 261名이며, 이것은 美國市民의 採用可能數의 300名乃至 401名 보다는 下廻하는 數로서, 美國市民은 國際의으로 採用되는 範疇의 全職員에 對하여는 22.3[퍼센트]만이 採用되었다”⁽⁹²⁾고 「체코슬로바키아」等 諸國의 非難을 反駁하였다.

國際聯合 事務局의 人事局長 「하밀튼」氏는 “職員의 採用可能數는 加盟國의豫算에 對한 寄附金納付 比率에 依據하여 計定되는 것”⁽⁹³⁾임을 強調했다. 蘇聯代表 「로스친」(Roshchin)

(88) *Ibid.*, p. 171, paras. 21—22.

(89) *Ibid.*, p. 179, paras. 42—44.

(90) *Ibid.*, p. 177, paras. 4—5.

(91) *Ibid.*, p. 178, para. 8.

(92) *Ibid.*, p. 181, paras. 1—4, 5th Committee, 792nd meeting, 16 Nov. 1960.

(93) *Ibid.*, p. 182, para. 12.

은 “事務局職員의 地域的 配分에 의한 採用에 關한 事務總長의 報告(A/C. 5/833 and Corr. 1)는 先入感을 가진 것으로서, 例를 들면, 美國은 專門職位의 職員數의 「쿼터」中 76「퍼센트」를 占하였을 뿐이라고 指摘한 것이나 美國市民은 全 職員中의 3分의 1이 採用되었는데도 美國은 아직도 採用 未達數에 있다고 同 報告에서 指摘된 바 있는 것은 不當한 것”⁽⁹⁴⁾이라고 非難하였다. 또한 東南亞 諸國代表도 “亞細亞・極東은 西歐 및 北美에 比하여,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 採用은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⁹⁵⁾는 不平을 吐露하였다.

그러나 加盟國 代表中, 埃及代表 「엘・메씨리」(El-Messiri)는 “實은 加盟國中에서는 資格을 具備한 人材를 國家發展計劃을 遂行하는데 確保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大部分의 加盟國은 事務局의 構成이 잘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事務總長의 報告(A/C. 5/890) 등으로 職員採用에 있어서 地域的인 配分原則을 適用하려는 事務總長의 努力은 크게 改善되었다. 그러나 特히 事務次長級 및 局長級採用에 對하여는 調整되어야 한다”⁽⁹⁶⁾는 것을 指摘하였다. 「이스라엘」代表 「리베란」(Liveran)은 “憲章을 遵守하기 위하여, 事務局의 職員은 個人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加盟國을 代表하는 國民은 아니다”⁽⁹⁷⁾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우크라이나」代表에 比例함은 “事務局의 職員構成은 77.2「퍼센트」가 西歐勢力圈의 國籍所有者이고, 中立國家는 17.2「퍼센트」, 社會主義國家의 國籍所有者는 5.6「퍼센트」이며, 高位職位에 對하여는 더욱 不滿足스럽다”⁽⁹⁸⁾고 力說하였다. 印度代表도, “地域的 配分面에서 國際聯合豫算에 對한 寄附金納付에 比例함은 不滿足스러운 基準이다”라고 말하면서, “事務局은 國際的인 機關으로서 加盟國의 信任을 받아야 될 것”임을 強調하였다.⁽⁹⁹⁾

事務局職員 採用에 對하여, 加盟國 中에서 採用 未達인 國家에는 考慮될 事項이 있다. 그 하나는 採用數 未達國家의 大部分은 最近에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된 것이다, 둘째로, 어떤 國家는 그들 國內的인 問題를 解決하지 못한 때문이다. 例를 들면, 蘇聯과 東歐諸國은 國際公務員制度의 基本的인 理念을 受諾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明白히 한 바 있었다.⁽¹⁰⁰⁾

1960年 8月 31日 現在 82個國의 加盟國中 아직 10個國은 事務局職員으로 自國의 國籍

(94) *Ibid.*, p. 184, paras. 26—30.

Ibid., pp. 187—189, paras. 1—17. 蘇聯側의 非難에 「풀랜드」代表도 同調하였다.

(95) *Ibid.*, p. 207, 208—211, para. 18. Ceylon의 Rajapatirana의 主張. Ukraine代表, Pakistan, Bulgaria 등도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狀況에 不滿을 表明하였다.

(96) ORGA: 16th Sess., Fifth Committee, 20 Sept. 1961—22 Feb. 1962, p. 91, paras. 25—26.

(97) *Ibid.*, p. 96, para. 28.

(98) *Ibid.*, p. 123, para. 44.

(99) *Ibid.*, pp. 127—128, paras. 1—11.

(100) *Ibid.*, p. 185, para. 16, 14 Nov. 1961, 870th meeting, *ibid.*, pp. 195—196, paras. 7—15. 蘇聯代表 Roshchin은 國際聯合 事務局의 美國市民의 職員中 95「퍼센트」는 永久職으로 任命되어 있다고 非難하였다.

所有者가 採用된 바 없으며, 5個國은 不均衡의in 比例로 採用되었다. 17個國의 新加盟國으로 말미암아, 더욱 地域的인 配分問題는 總會에서 또다시 論難의 焦點이 되었다.⁽¹⁰¹⁾

蘇聯은 事務局이 加盟國의 3個「그룹」인 “社會主義”國家와, “中立主義”國家 및 “西方”國家가 均衡 있게 構成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強調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기위한暫定의in 措置로서 職員採用에 있어서 西歐 및 北美出身의 新規採用은 中止하여야 된다고 論難된 바 있었다.⁽¹⁰²⁾ 그러나 여러 代表들은 事務局의 3「그룹」에 의한 改編案을 反對하였다.

1960年 12月 18日 總會 第954次 會議에서는 第5委員會에서 勸告한 決議案을 決議 1559(XV)로써 賛成 82, 反對 零으로 採擇하였다.⁽¹⁰³⁾ 同 決議에서는 地域的 配分에 關한 1947年 11月 15日 總會決議 153(Ⅱ)를 再確認하고, 各 加盟國에 對한 採用可能數를 決定하는 現行方法인 國際聯合의豫算規模에 依據하는 것을 認定하고, 事務局의 任期制任命(fixed-term)의 比率을 增加시키며, (i) 1959年 12月 5日 總會決議 1446(XIV)에 의하여 任命된 專門家委員會(the Committee of Experts)에게 要請하여 事務局의 地域的인 配分의 對象이 되는 職位의 範疇를 研究하고, 比較의 重要한 여러 職位에 對하여도 地域的인 配分을 確保하도록 하는 方案을 第16次 總會에 報告토록 할 것과, (ii) 事務總長에게 要請하여 總會決議인 事務局職員의 地域的인 配分을 履行하도록 하는 努力を 繼續할 것과, (iii) 事務總長에게 上記 指摘한 事項의 履行에 關하여 第16次 總會에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要請하는 内容을 決議하였다.

事務總長은 1961年 8月 31日 末 現在 總會에 提出된 年次報告에서 國際聯合의 事務局職員中 地域的인 配分을 要하는 職位가 1,382名이 된다고 밝혔다.⁽¹⁰⁴⁾

事務總長은 同報告에서 事務局職員의 地域的인 配分問題가 加盟國의 이면 利益 혹은 理念(ideologies)의 均衡된 代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指摘하였다.⁽¹⁰⁵⁾

蘇聯側 專門家들은 事務局職員에 對한 “永久의in 公務員制度”(permanent civil service)에 關하여는 地域的인 配分下의 職位로서 正當한 것은 아니라는 見解이었다. 즉 그들은 이러한

(101) YBUN, 1960, *op. cit.*, p. 557.

(102) *Ibid.*, p. 557. Dallin, *The Soviet Union at the United Nations*, *op. cit.*, p. 153.

(103) YBUN, 1960, *ibid.*, p. 559, 587.

(104) YBUN, *ibid.*, p. 536.

1,382名의 地域的 配分을 要하는 職位를 보다 다음과 같다. 事務次長級(U-S)은 18名, 局長級(D-2) 26名과 先任職位(principal officer: D-1) 65名으로 計 109名이고, 專門職位의 範疇에 屬하는 著가 1,111名, (P-5級은 162名, P-4級은 238名, P-3級은 324名, P-2級은 285名, P-1級은 57名)이다. 이 外에 國際聯合本部의 一般職位 (G-5) 162名도 地域的인 配分의 對象이 되는 職位이다.

(105) ORGA: Fifteenth Sess., *Annexes*, Vol. II, 20 Sept.-20 Dec. 1960 and 7 March-21 April 1961, Agenda item 50, p. 12, para. 10.

概念으로서는 事務局의 職員採用의 履行이 不滿足스러우며, 또한 不適當한 것으로 그것은 한쪽에만 依據한 方便이라고 보고 있다. 國際聯合의 事務局은 實事上 國際的인 機關이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地域的인 配分下에 職位를 充員하는 것은 臨時的인 契約에 의할 것이 必要한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에서 만일 事務局에 新로운 劢力의 流入의 必要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며, 事務局과 國際聯合 各加盟國間의 多樣의 政治的인 傾向 및 社會制度間의 相互作用과 繼續的인 接觸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¹⁰⁶⁾

如何는 間에 事務局職員의 採用面에 있어서의 地域的인 配分問題는 國際聯合이 發足한 初創期에 있어서는 不滿足 스러웠으나, 漸次 보다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하여 採用하도록 徐徐히 調節되어 가고 있다.⁽¹⁰⁷⁾

이러한 것은 事務總長의 報告(A/6270, A/C. 5/933 및 Corr. 1)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健全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濟洲代表는 “80餘個國은 地域的인 配分面에서 보면 採用可能數 以上으로 採用되어 있으며 또한 採用可能數에 適合하게 採用되어 있다”⁽¹⁰⁸⁾고 指摘한 바를 보아도 漸次 事務局의 職員採用도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하여 採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改善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어떤 地域(regions)에 있어서는 地域的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에 不均衡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예를 보면, 中·近東의 境遇에 있어서高位職位에 對하여서는 採用未達이며, 東歐 亦是 採用未達 國家라고 看做되고 있다”⁽¹⁰⁹⁾는 點을 濟洲代表는 指摘하였다.

또한 事務總長이 直面한 다른 問題는 加盟國의 增加에 따른 地域的인 配分에 알맞는 採用可能數를 如何히 適用하느냐 하는 問題와, 몇몇 國家로 부터 職員의 採用이 困難하다는 點을 如何히 解決하는가 하는 問題이다.⁽¹¹⁰⁾

그런데 地域的인 配分의 對象이 되는 事務局職員은 1961年에 1,382名이던 것이 1962年에는 1,425名이라고 事務總長 報告(A/C. 6/933 및 Corr. 1)에서 指摘된 바를 보아도, 地域的인 配分의 對象이 되는 職員數가 每年 漸次 增加되고 있다.⁽¹¹¹⁾

蘇聯側은 地域的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는, “事務局의 構造를 世界의 침된 劢力과 一致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國際聯合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權能을 行使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國際聯合의 效率化를 위하여는 事務局을 보다 實質的인 面에 依據하여 改編하여야 될 것”임을 提議하였다. (i) 事務總長에 政治的인 顧問制

(106) ORGA: Sixteenth Sess., Annexes, Vol. III, 19 Sept. 1961—23 Feb. 1962 and 7—28 June 1962, *op. cit.*, p. 8, para. 48. Document A/4776, June 14, 1961, para. 48.

(107)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op. cit.*, p. 82.

(108) ORGA: Seventeenth Sess., Fifth Committee, 19 Sept.—20 Dec. 1962, *op. cit.*, p. 210, para. 7.

(109) *Ibid.*, para. 8.

(110) *Ibid.*, p. 212, para. 22, Argentine 代表 Quijano가 指摘한 것임. 950th meeting, 16 Nov. 1962.

(111) *Ibid.*, p. 212, para. 27, Alexander MacFarquhar (Director of Personnel)이 指摘한 것임.

度를 新設하여 活用하도록 할 것과 3個「그룹」에 의하여 職員이 代表하도록 하여야 하며, (ii) 事務局의 主要部(main departments) 등에서는 1名의 責任者 代身에 3名의 責任者(1名은 長, 2名은 代理)로서, 각각 3個「그룹」에서 1名씩 選出하도록 할 것, (iii) 加盟國의 職員採用에 있어서 「쿼터」를 超過하고 있는 國家의 國民은 더 採用하지 말 것, (iv) 앞으로는 永久職位에 對한 職員採用은 避하고, 永久的 契約下에 있는 職員採用의 數를 漸進的으로 減少할 것, (v) 蘇聯 및 社會主義國家로 부터 採用된 職員中에서 事務局과 國際聯合各機關의 責任 있는 職位에 對한 补職을 增加시키도록 할 것, (vi) 技術援助分野에 있어서 蘇聯專門家에 對하여 差別을 하지 않도록 할 것과 同時に 西歐諸國은 國際聯合의 技術援助活動을 未開發國家에 對한 經濟 및 政治的侵透方便으로서 使用하여서는 안된다는 點 등을 強調하면서, 職員採用에 있어서 永久的 契約의 原則에 反對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다. 그理由로서는, 그것은 事務局에 있어서 採用未達國의 國民의 採用機會를 박탈하는 것이 되며 蘇聯의 國民이 事務局에서 勤務할 수 있는 機會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永久職契約은 減少시켜야 하며, 나아가서는 窮極의으로는 排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¹¹²⁾

國際聯合에서는 事務局職員 採用에 있어서 恒常 論難되고 있는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하여 採用한다는 問題는 漸進的으로 改善은 되어 가고 있으며, 新規로 加盟한 國家의 大部分은 獨立을 爭取한 新生國家들이다. 그리고 事務局職員의 半數以上은 西歐陣營出身이라는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點에 對하여도 不平이 많으며, 廣範한 地域的 配分에 依據한 職員採用面에 있어서도 進展이 늦는 것도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 理由를 추려 보면, (i) 1961年부터 1962年에는 166名이 任命되었으며, 그中의 約半數는 東歐加盟國에서 48名, 「아프리카」諸國에서 33名이 採用되었다. 他地域의 國民이 任命된 것은 亞細亞 및 極東에서 26名, 西歐에서 20名, 南美에서 18名, 北美에서 8名, 中東에서 7名이 採用되었으며, 그 외의 6名은 非加盟國인 「자마이카」에서 4名,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에서 2名이 採用되었다.⁽¹¹³⁾ (ii) 이들의 約半數는 短期間勤務者(short service staff)로서 採用된 것으로, 1年間에 空席이 된 約半數는 事務局에 있어서 採用未達數에 이르고 있는 加盟國에서 臨時職으로 代置하기 위하여 採用되는 것으로 全般的인 均衡에는 變動이 일어나지 않는다.⁽¹¹⁴⁾ (iii) 必要한 技術 및 用語面의 熟練된 職員의 不足과 國際機構에 勤務할 수 있는 資格을 具備한 人材의 不足이라는 問題이다. 人事局長 「로버트손」(Robertson)氏는 1957年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問題에 關하여, “어떤 國家의 代表가 指摘한 바를 보면, 亞細亞 및 極東經濟委員會(ECAFE)의 職位에 對하여 事務總長의 命을 받은 代表가 10名乃至 12名의 志望者를 發見

(112) *Ibid.*, p. 216, paras. 9—10, 12.

(113) ORGA: Seventeenth Sess., Annexes, Vol. III, 1962, *op. cit.*, Agenda item 70, pp. 14—15, para. 9.

(114)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op. cit.*, p. 83.

은 하였으나, 그러나 이들中單한名도 國際公務員으로 採用할 수가 없었다. 關係國家에서는 이들中3名乃至4名은 1960年까지는 ECAFE職員으로 採用될 수 있을 것이라는 回翰을 보내온 바 있었다”⁽¹¹⁵⁾는 點을 보아도, 各加盟國에서 有能한 人材를 自國의 國家行政에 보다 많이 從事시키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iv) 加盟國政府에서는 恒常 資格을 具備한 人材를 찾고 있는 人事局의 努力에 全幅的으로 協調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特히 그것은 東歐諸國의 共產國家에서 職員을 採用한다는 것이 더욱 困難하다. 이들은 恒常 自國의 國籍所有者가 採用可能數에 未達되고 있다고 不平을 表示하면서도 自國의 有能한 人材의 採用에 對하여서는 敵對觀하는 傾向이 있다. 「폴란드」의 代表「메고우스키」(Machowski)가 指摘한 바와 같이 事務局에서 適用하고 있는 廣範한 “地域的인 配分”的 用語 解釋을 受諾하지 않았다. 즉 “地域的인 配分”的 解釋을 國家의 「쿼터」라고 그릇 理解하는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人事局은 「쿼터」「리스트」에 對한 如何한 調整을 決定하기에 앞서서 “關係國家와 協議하여야 될 것”이라고 強調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¹⁶⁾ 그러나 事務局職員은 그들의 現在의 國籍에 의하여 區分될 것이지, 事務局에 의하여 그와 같은 問題를 發議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國際聯合에서는 地域的 配分에 關하여 두가지 問題가 論難된 것은 때로는 混亂을 차아내기도 하였다. 그 하나는, 蘇聯側의 主張으로 “事務局의 公平無私하다는 것은 神話라고 단정하고, 事務局職員은 그들 國家의 政府를 代表하여 忠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新生國家가 事務局의 “各級의 職位”에 參與할 것을 喝望하는 壓力이 顯著히 增加함을 엿볼 수 있다.⁽¹¹⁷⁾ 結局 第17次 總會에서는 近來에 보기 드물게 事務局職員의 “地域的 配分”에 依據하여 採用하는 問題가 長期間 論難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決議 1852(XVII)를 採擇하여, 事務總長이 職員任命政策에 關하여 두가지 觀點에서 原則을 作成하여 第18次 總會에 報告하도록 決定하였다. 즉 “地域的인 配分”에 依據한 事務局職員의 採用과 任期制任命에 關한 比率 問題를 指摘한 것이다. 事務總長은 同 報告에서 各加盟國의 “採用可能職位數”에 있어서 可能한 限 地域的인 配分을 考慮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廣範한 地域的 配分을 確保하기 위하여, 加盟國의 數와 加盟國의 寄附金納付 및 加盟國의 人口面 등을 考慮하도록 하였다. 修正된 加盟國의 “採用可能職位”는 全體로 1,500名이 地域的 配分의 對象이 되며, 任期制任命은 全體의 25〔퍼센트〕以内를 維持할 것을

(115) *Ibid.*, p. 83. ORGA: 12th Sess., *Fifth Committee*, 630th meeting, 28 Nov. 1957, *op. cit.*, p. 161, para. 62.

(116) ORGA: 16th Sess., *Fifth Committee*, 860th meeting, 20 Oct. 1961, *op. cit.*, p. 74, para. 29.

(117) ORGA: 16th Sess., *Fifth Committee*, 873rd meeting, 7 Nov. 1961, *op. cit.*, p. 145, para. 3. Guinea 代表 Toure 가 指摘하였다.

(118)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 16 June 1963—15 June 1964, ORGA: 19th Sess., Supp. No. 1 (A/5801), 1964, p. 146.

“Issue before the eigh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p. 183, YBUN, 1962, *op. cit.*, pp. 519—520.

事務總長은 要請하였다. 第 5 委員會에서도 이 두가지 問題를 論議後 總會에 附議하였는데, 總會는 事務總長에 對하여, 事務局의 專門職位에 關하여 各 加盟國이 地域의 配分에 의하여 參與하도록 하는 努力を 繼續할 것을 要請하는 同時에, 局長級 以上의 職位에 對하여 各地域에 있는 加盟國의 均衡잡한 採用을 하도록 要請하는 決議 1928(XVIII)를 採擇하였다.⁽¹¹⁹⁾

이와 같이 國際聯合에 事務局職員의 採用이라는 國際行政의 人事政策面에 對하여 全加盟國이 非常한 關心을 갖고 自國의 國籍所有者를 보다 高位職位에 많이 採用할 것을 希求하는 同時에, 採用未達數에 該當하는 國家에서는 事務局職員의 採用面에서 “地域의 配分” 原則의 適用을 強力히 要請하고 있는 形便이다. 事務總長은 그와 같은 各種의 壓力を 받아 들이면서, 同 原則이 보다 效率的으로 適用되도록 努力を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3. 適用의 範圍와 基準

1948年 事務總長은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採用可能數”的 制度를 提案하였다.⁽¹²⁰⁾ 同 制度는 國際聯合의 豫算에 對한 各加盟國이 寄附金納付 規模에 依據하여 採用範圍를 定하는 制度이 있으며, “採用可能數”는 25「퍼센트」內外를 適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各加盟國에 對한 最少 採用可能數를 1에서 3까지 規定함으로써 規模의 最下로 調整하였다. 또한 10「퍼센트」 以上의 寄附金을 納付하는 加盟國(美國 및 蘇聯)에 對하여는 採用可能數를 25「퍼센트」 以下로 減少시키도록 하는 同時에, 그 數를 增加시키지는 않도록 調整하였다.⁽¹²¹⁾

이와 같은 定則(準則)은 總會의 여러 會期동안 加盟國에 의하여 論議되고 批判되었었다. 1951年 第 5 委員會에서는 두 가지 決議案이 提起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事務局機關과 活動審查에 關한 專門家委員會⁽¹²²⁾(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eview of the Activities and Organization of the Secretariat)에의 報告에 包含되었으며, 故 「함마슬드」 事務總長이 論評한 바 있었다.⁽¹²³⁾

同 專門家委員會에서는, (i) 憲章에 規定된 基本의인 原則, (ii) 地域의인 配分의 對象이 되는 範疇, (iii) 各 加盟國의 職位의 範圍를 決定하는 基準, 및 (iv) 이의 實行을 위한 賦課에 있어서의 實質上의 困難點 혹은 修正된 定則(準則)으로써 如何히 이것을 克服할 것인가에 關하여 檢討하였다.

結局 廣範圍한 地域의인 配分에 關한 定則(準則)을 만드는데 있어서, 國際聯合의 加盟國의 數, 國際聯合 豫算에 對한 各加盟國의 寄附金納付實績과 加盟國의 人口面을 參酌하여 決定하

(119)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 *ibid.*, p. 146.
Int'l Conciliation, *ibid.*, p. 184.

(120) ORGA: Third Sess., Plenary Meetings, *Annexes*, Agenda item 40, document A/652.

(121) ORGA: 17th Sess., *Annexes*, Vol. III, 1962, Agenda item 70, p. 3, para. 11. Document A/5270, 24 Oct. 1962.

(122) ORGA: 16th Sess., *Annexes*, Vol. III, 1962, Agenda item 61, document A/4776, pp. 7—13 paras. 42—93.

(123) *Ibid.*, document A/4744, pp. 45—48, paras. 31—40, 30 June 1961.

도록 建議하였다.⁽¹²⁴⁾ 즉 同 專門家委員會에서는 7 個의 主要한 世界의 地域 出身의 職員을 均衡있게 確保할 것을 要望한 것이다. 이와 같은 3 個의 範疇로써 地域의in 配分을 確保하는 것으로 7 個 地域으로서는 「아프리카」·亞細亞 및 機東·東歐·西歐·南美·中東 및 北美로 大別하였다. 加盟國의 寄附金의 規模는 國際聯合의 定期豫算에 對한 納付比率에 依據한 다는 點을 밝혔다.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同 專門家委員會의 多數 委員들은 다음과 같은 内容을 勸告하였다.⁽¹²⁵⁾

(i) 各 加盟國에서는 最少 2 名을 事務局職員으로 採用하도록 한다. (ii) 이에 追加하여 加盟國의 人口 1,000 萬名으로 부터 1 億名 5,000 萬名 까지는 各 加盟國에서 1 名씩 더 採用할 것과, 人口 1 億 5,000 萬名을 超過하는 加盟國에 對하여서는 每 3,000 萬名이 超過되는 境遇에 1 名의 職員을 더 採用하도록 한다. (iii) 地域의in 配分下의 採用可能한 殘餘의 職位는 各 加盟國의 國際聯合 定期豫算額에 對한 寄附金 納付比率에 依據하여 配分하여야 된다는 것을 要請하였다.

그러나 同 專門家委員會의 蘇聯出身의 專門家는, 國際聯合 加盟國의 事務局職位의 「좌타」를 策定한다는 것은 國際聯合이 現在 3 個의 「그룹」인 “社會主義 國家群과 中立主義 및 西方陣營의 加盟國”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點을 指摘하고, 3 個 「그룹」의 加盟國이 均等하게 事務局에 代表되어야 하므로, 事務局職位는 이와 같은 3 個 「그룹」 加盟國이 參與하여 事務局의 課業을 均等하게 擔當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同 專門家委員會의 多數 委員들이 勸告한 基準은 이러한 3 個 「그룹」 加盟國의 均等한 參與라는 點을 等閑視한 措置라고 非難하였다.⁽¹²⁶⁾

蘇聯專門家는 事務局職員의 地域的 配分을 增進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事項에 對한 優先順位를 段階的으로 改善하여야 한다는 것을 提議하였다.⁽¹²⁷⁾

(i) 事務局의 職員採用의 契約은 그들의 國籍을 不問하고, 永久職을 賦與하는 契約은 卽時 中止하도록 努力할 것. 事務次長級 및 局長級(D-2)에 對한 永久職의 契約은 完全히 排除하여야 할 것이고, 局長級(D-1)의 職位中 永久職은 全體 局長級(D-1) 職位中 30「퍼센트」以下를 永久職 契約으로 할 것과, 專門職位의 範疇에 屬하는 職位는 同範疇의 全體 職員數의 40「퍼센트」以下를 永久職 契約으로 할 것.

(ii) 事務局 및 國際聯合의 執行機關에 있어서는 事務局職員에 對한 當該國家의 國籍所

(124) ORGA: 17th Sess., *Annexes*, Vol. III, *op. cit.*, Agenda item 70, document A/5270, pp. 3-4, para. 12. Document A/4776, *op. cit.*, 14 June 1961, p. 10, para. 74.

(125) Document A/4776, *ibid.*, pp. 10-11, paras. 75.

(126) *Ibid.*, p. 11, para. 78.

(127) *Ibid.*, p. 13, paras. 90-91.

有者의 職位가 이미 充員된 境遇에는 그와 같은 國籍所有者의 採用을 中止할 것.

(iii) 모든 事務局의 空席을 充員하는 境遇에는 各 加盟國의 採用可能數의 「큐터」에 未達하는 國家의 國籍所有者 만을 可能한限 採用하도록 提議할 것.

(iv) 事務局職位에 採用未達國家의 國籍所有者를 위하여 새로운 空席을 可能한限 만들도록 할 것.

(v) 停年退職의 年齡에 이른 全職員은 退任하도록 할 것.

(vi) 人爲的으로 만들어진 事務局의 高位職位 즉 2個의 事務次長級인 特別政治擔當 職位는 廢止할 것. 그 代身에 必要한 職位는 廢止한 職位代身에 新設하고, 이러한 新設職位는 採用未達國家에 全的으로 配當되도록 할 것.

(vii) 國際聯合의 全 加盟國이 事務局 및 國際聯合機關의 그들의 「큐터」를 充員할 수 있는 2年間의 計劃을 세워 實行하도록 할 것을 骨子로 한 内容을 提議한 바 있었다.

事務總長署理「우·탄트」氏는 國際聯合 加盟國이 職員의 構成에 있어서 基本的인 要素라는 點에 對하여 支持하였다. 즉 事務局 構成에 있어서 全 加盟國의 國籍所有者를 網羅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62年 8月 31日 現在 加盟國 104個國中 94個國의 加盟國의 國民이 事務局의 職員으로 採用된 바 있었다. 그리고 加盟國의 國籍所有者中 最少限의 採用者數는 1名은 包含시켜야 된다는 見解를 「우·탄트」氏는 披瀝하면서, 事務局에 있어서 現在 採用되고 있는 職員을 地域的인 配分에 의하여 그 數를 制限하는 것은 非現實의이라고 말하였다.⁽¹²⁸⁾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面에서 國際聯合의 經費負擔의 賦課規模에 依據한다는 問題는 廣範圍하게 受諾되고 있다. 專門家委員會에 의하여 提案된 地域的 配分의 規模를 定하는 主要한 要素로서의 寄附金賦課率은 72「퍼센트」의 比重을 갖는 것이라고 指摘되었다. 이러한 草案이 1961年 13個國에 의하여 第5委員會에 提起된 것이었으나, 實質적으로 寄附金에 關하여서는 3分의 1의 比重을 適用하도록 策定되었다.⁽¹²⁹⁾

그리고 同 專門家委員會는 人口面에 對한 그 比重을 15「퍼센트」로 두도록 하는 것을 要請한 것이었다.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에 있어서 人口面을 配慮한다는 것은 退步한 것으로, 大國에게 人口面을 考慮하여 職員採用을 考慮케 한다는 것은 比較的 重要치는 않는 것이다. 共同提案에 있어서 人口問題에 높은 比重을 둔 것은, 現在의 事務局 規模의 配分面에서 그 比重을 3分의 1로 하자는 것이다. 故 「함마술드」事務總長도 人口를 同地域의 配分의 實績으로서 插入하는 것을 要望하였다. 人口問題를 同配分原則에 適用한다는 것은 弱少國家와 強大國間에 크게 論難되었다.⁽¹³⁰⁾ 즉 人口問題를 同制度에 適用하게 되면 先進工業國

(128) *Ibid.*, p. 4, paras. 13—12.

(129) *Ibid.*, p. 4, paras. 16—17.

(130) *Ibid.*, paras. 20—23.

이 「쿼터」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減少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西歐에 對한 「쿼터」의 縮少를 뜻하는 것이다. 後進國으로서 人口가 많은 亞細亞 諸國의 「쿼터」를 實質的으로 增加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¹³¹⁾

事務局職員의 地域的 配分에 의한 構成을 1948年과 1962年을 對比하여 보면 漸次 改善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³²⁾

年度 區分 地城	1948年					1962年				
	採用可能數			實績		採用可能數			實績	
	加盟國數	人員數	%	人員數	%	加盟國數	人員數	%	人員數	%
아프리카	4	23	2.4	17	1.8	29	68	4.5	81	5.8
亞細亞極東	8	132	13.6	111	11.5	16	204	13.5	222	16.0
東歐	6	97	10.0	68	7.1	10	300	19.8	144	10.4
西歐	10	228	23.5	306	31.7	16	350	23.1	364	26.2
南美	20	84	8.6	77	8.0	20	88	5.8	123	8.9
中東	8	26	2.7	18	1.9	11	28	1.9	51	3.7
北美	2	381	39.2	366	38.0	2	476	31.4	404	29.0
計	58	971	100.0	963	100.0	104	1,514	100.0	1,389	100.0

즉 1948年에는 西歐地域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加盟國은 事務局職員의 採用可能數에 未達이다. 1962年 8月 31日未現在 加盟國數는 1948年的 58個國으로 부터 104個國으로 增加되었으며, 따라서 採用可能數는 寄附金納付 規模의 調整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變動되었다. 結局 地域的 配分의 目標는 繼續 流動의이며, 1962年에 이르러서는 東歐地域을 除外한 數個地域은 새로운 採用可能數의 目標에 曹 가까워졌다.

事務總長 署理 「우·탄트」氏는 事務局職員 構成이 加盟國數의 增加에 따라 採用可能數의 目標가 徹底한 測定方法에 依據하지 않고서도, 또한 充分한 時間이 許容되지 않아도 適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經驗에 의하여 提示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事務局에 의한 實質的인 職員採用 努力은 加盟國政府로 부터의 協調와 必要한 援助의 措置를 받았다. 地域的 配分의 調整은 加盟國의 數가 增加됨에 따라, 더욱 再論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1953年과 1958年間의 事務局職員의 國籍別構成은 커다란 變動을 가져 왔으나, 事務局 規模는 그대로 變動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도⁽¹³³⁾, 事務局의 制限된 職員數는 加盟國數의 增加에 따르는 地域的 配分에 依據하여 「쿼터」에 알맞게 採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位의 定則(準則)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다른 要素는

(131)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1962, *op. cit.*, p. 476.

(132) ORGA: 17th Sess., *Annexes*, Agenda item 70, document A/5270, *op. cit.*, p. 3, para. 7.

(133) *Ibid.*, paras. 9-10.

事務局 内의 比較的 重要한 職位에 對한 問題이다. 事務局 内의 高位職位는 事務局의 課業에 影響力を 미칠 수 있는 職位로서 各加盟國의 威信이라는 見地에서도 事務次長 職位 또는 局長級(D-2) 등은 下位職位인 P-1 級, P-2 級 또는 一般職位인 G-5 등 보다는 高位職位로서 各 加盟國에서 차지 하려는 慾望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點을 考慮하여 職位의 配分에 있어서 定則(準則) 속에 다른 點數制를 適用하는 問題가 擙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點數制는 그와 같은 問題를 解消하는데 很 困難하는 못하였으며, 特히 行政的인 面에서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UNESCO(國際聯合教育·文化·科學機構)에서는 그와 같은 職位에 對한 點數制를 採擇한 바 있었으나 그後 废止하였으며, FAO(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에서는 點數制를 採擇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經驗은 鼓舞的은 되지 못하였다.⁽¹³⁴⁾ 다시 말하면 地域的인 配分에 의한 職員採用에 있어서, 職位에 對한 配點制度도 별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如何한 定則(準則)에 依據한 均衡잡힌 地域的 配分으로 職員을 採用한다는 問題는 經歷職인 國際公務員制度가 實績에 依據하고 있다는 點에 對하여 많은 困難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公務員制度諮問委員會(the Int'l Civil Service Board)에서는 職員採用에 있어서 嚴格한 「쿼타」制度를 適用하는데 對하여 警告한 바 있었다. 「쿼타」制度라는 것은 完全한 手段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實質的이고 때로는 擁護할 수 있는 點도 있다. 同委員會에서는 「쿼타」制度에 對한 여리가지 基礎的인 것은 進展되었다는 것을 周知하고 있으나, 地域的인 配分에 對한 嚴格한 「쿼타」를 固定시킨다는 것은 有害한 것임을 指摘한 바 있었다.⁽¹³⁵⁾ 地域的인 配分은 事務局 職員의 現在의 國籍 또는 市民權에 依據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三. 結語：“地域的配分” 原則의 諸問題點

憲章에 規定하고 있는 事務局의 職員採用에 있어서 廣範한 地域的配分에 依據한다는 問題가 國際聯合에서 얼마나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가를 檢討하여 보았다.

事務總長은 地域的 配分에 依據한 職員採用을 確保하기 위하여 全 職員의 25「퍼센트」는

(134)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1962, *op. cit.*, p. 477.

Tien-Cheng Young, *Int'l Civil Service: Principles and Problems*,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Brussels, 1958, *op. cit.*, p. 105.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 *op. cit.*, p. 96.

FAO 計劃에 의하면, p-1에 1點, p-2에 2點, p-3에 4點, p-4에 6點, p-5에 8點, Principal officer에 10點, Principal Director에 12點, Deputy Director General에 15點을 配點하고, 寄附金納付의 規模에 對하여 0.04%는 1點으로 하여 各職位에 對하여 配點을 하고 있다.

(135) Tien-Cheng Young, *Int'l Civil Service*, *op. cit.*, p. 10, 6.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 *op. cit.*, p. 8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2th Sess., Fifth Committee, 63th meeting, 28, Nov. 1957, *op. cit.*, p. 161, para. 62.

任期制任命(fixed-term appointment)으로 할意向을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各加盟國中에서 經歷職任命에 適格한 採用志望者の 補充이 不足하므로 制限된 範圍内에서 採用努力를 傾注하기 위한 措置이기도 하다.

總會決議 1928(XVIII)에 의하여 事務局 内의 專門職位에 모든 加盟國의 國民이 代表될 수 있도록 하는 努力を 繼續하도록 事務總長에게 要請하고, 事務總長에게 D-1 및 그 以上的職位를 包含한 各 地域의 加盟國에 對한 均等한 職位에 依據하여 職員을 採用하도록 配慮할 것을 要請하였다.⁽¹³⁶⁾

1963年 5月 31日 現在 두 個 地域의 “採用未達”地域에 對한 重點的인 採用努力은 「아프리카」 및 東歐地域에 集中되었다. “採用未達”地域内에서도 充分히 職員을 採用한 加盟國에 對한 職員의 採用은 同 地域內의 다른 國家의 國民을 採用하지 못하는 境遇에 限하여 任命하도록 配慮되었다.⁽¹³⁷⁾ 1962年 8月 31日 現在 國際聯合 加盟國數는 104個國으로서 94個國의 國籍所有者가 事務局에 採用되고 있다. 몇해 동안 事務局內에서의 採用可能數에 對한 變動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⁸⁾

區 分	年 度	(8月 31日 現在)			
		1959	1960	1961	1962
加 盟 國 數					
採 用 可 能 數 超 過 國 數		25	26	30	35
採 用 可 能 數 內		40	40	46	47
採 用 可 能 數 未 達 國 家		6	6	8	12
採 用 成 國 家 數		71	72	84	94
採 用 되 지 못 하고 있는 國 家 數		11	10	15	10
計		82	82	99	104

즉 1959年에는 採用可能數를 超過한 國家는 加盟國 82個國 中에서 25個國이고, 採用되지 못한 國家가 11個國이었던 것이, 1962年에는 104個國中 採用可能數를 超過한 國家가 35個國에, 採用되지 못하고 있는 國家數는 10個國에 이르고 있다.

特히 東歐 諸國中 採用未達國으로 되어 있는 蘇聯, 「우크라이나」 및 白露西亞는 그들의 全體의인 採用可能數가 201名乃至 267名임에 比하여 66名 만이 採用되고 있으며, 그 外에 希臘, 印度, 「폴웨이」, 「파키스탄」 및 UAR 등 加盟國은 採用可能數를 超過하여 採用되

(136)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 16 June 1963—15 June 1964, *op. cit.*, p. 146.

(137) *Ibid.*, pp. 146—147.

(138) ORGA: 17th Sess., *Annexes*, Vol. I, Agenda item 70, document A/C. 5/933, 17 Oct. 1962, *op. cit.*, p. 14, paras. 4—5.

(138) *Ibid.*, p. 15, para. 11, p. 16.

고 있다.

1961年 8月 31日 現在와 1962年 8月 31日 現在의 東歐 諸國의 採用可能數와 實質的으
로 採用되고 있는 現況은 다음과 같다.

國 家 度 年	1961. 8. 31.	1962. 8. 31.	增 減	採用可能數	
				G-5 以上	P-1 以上
알 바 니 아	—	—	—	1-3	1-3
불 가 리 아	4	5	+1	2-4	2-3
白 露 西 亞	1	2	+1	6-10	5-9
체코슬로바키아	11	16	+5	13-22	12-20
헝 가 리	5	5	—	6-11	6-9
폴 랜 드	23	26	+3	15-24	13-22
루 마 니 아	2	1	-1	4-6	3-5
우 크 라 이 나	2	5	+3	23-38	20-34
蘇 聯	59	74	+15	172-229	152-203
유고슬라비아	10	10	—	4-7	4-6
計	117	144	27	246-354	218-314

또한 1961年 9月 1日 부터 1962年 8月 31日 現在 地域의 配分에 依據하여 採用된 職
員 166名에 對한 職級別 分布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⁹⁾

地域 職位	U-S	D-2	D-1	P-5	P-4	P-3	P-2	P-1	計
아프리카	2	1	—	2	1	6	10	11	33
亞細亞・極東	—	1	1	—	3	11	8	2	26
東 欧	2	—	5	9	9	16	7	—	48
西 欧	1	—	—	2	4	4	3	5	20
南 美	1	—	—	—	3	4	9	1	18
中 東	—	—	—	1	2	—	3	1	7
北 美	—	—	—	3	2	2	1	—	8
非 加 盟 國	—	—	—	—	1	1	3	1	6
計	6	2	7	17	25	44	44	21	166

그리고 事務局職員 採用에 있어서 任期制任命을 混合하여 採用한다는 것은 高位職位에 對
한 '非經歷職' (non-career) 任命의 比率을 增加시키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職員들의 昇進
機會를 制限하게 되는 것이다. 1961年 3月 1日 現在 P-1에서 P-5級 까지 昇進對象者에
包含된 者만 하여도 前年度에 17名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다음 해에도 如前히 昇進을 待

(139) *Ibid.*, pp. 18-19, Table 2. *ibid.*, p. 26.

地域의 配分原則의 適用을 받지 않는 用語分野에 從事하는 職員의 地域別 内譯을 보면 1962年
8月 31日 現在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는 4名, 東歐는 37名, 西歐는 238名, 南美는 50名, 中東는 7名, 北美는 91名, 非
加盟國은 16名으로 用語分野에 從事하는 職員은 501名에 이르고 있다.

機하는 狀態이었다. 이것은 어떤 比率, 즉 50「퍼센트」는 모든 等級의 空席에 對하여서 异進의 必要性에 直面하여 异進시키도록 할 것이 要望되며, 또한 보다 好은 廣範한 地域的 配分의 必要性에 立脚한 新規 任命을 固執하게 되는 것은 高位職位에 對하여서와 마찬가지로 下位職位에서도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다.⁽¹⁴⁰⁾ 新生國이 大學 國際聯合에 加入함으로써, 이들 諸國이 自國의 國民을 事務局職員으로 迅速히 多數를 採用하여 출 것을 要請하는 壓力を 加하며, 限定된 事務局職員定員에 廣範한 地域的 配分 原則을 適用하여야 됨으로써, 事務局의 人事政策面에서는 이 點을 解決하여야 된다는 難關에 逢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事務局職員 任命에 있어서 永久職 任命 보다는 短期的인 任期制 任命을 함으로써 每年 論難되고 있는 地域的 配分에 의한 職員 任命問題를 緩和하여 보려는 試圖가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

事務局 人事局長 「하밀頓」氏가 말한 바와 같이 全 專門職位의 20「퍼센트」는 任期制 任命에 의하여 契約되어야 하며, 그것이 地域的 配分原則의 増進을 위하여 보다 要望된다면, 20「퍼센트」의 比率을 올려야 될 것임을 指摘하였다.⁽¹⁴¹⁾ 또한 佛蘭西 代表 「가낭」(Ganem)도 短期制 任命인 任期制 任命의 現行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引上하여야 된다고 強調하였으며,⁽¹⁴²⁾ 蘇聯 代表도 永久職 任命은 減少시키고 終局에 가서는 永久職 任命制는 排除하여야 될 것이라고 主張한 바를 볼 수 있다.⁽¹⁴³⁾

이와 같이 短期制 任命인 任期制 任命은 1958年에는 全體職員의 14.5「퍼센트」이던 것이, 1960年에는 17.3「퍼센트」, 1961年에는 20.5「퍼센트」로 增加하였으며⁽¹⁴⁴⁾, 1962年 8月 31日 現在 1,267名中 25.4「퍼센트」인 322名이 任期制 任命⁽¹⁴⁵⁾으로 採用되고 있음을 보아도 그 比率이 每年 增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事務局 内의 永久職과 任期制 任命의 比率을 보면 다음 「페이지」의 内譯과 같다.⁽¹⁴⁶⁾

또한 「아프리카」諸國은 新生國으로서 自國內에서 보다 有能한 資格을 具備한 人材가 必要한 것이고, 有能한 人材를 事務局職員으로 登用시킬만 한 人的 資源을 充分히 確保하고 있지

(140)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Int'l Org.*, Vol. XVI, No. 3, 1962, *op. cit.*, p. 479.

异進의 機會가 制限되고 不足하다는 것이 國際聯合事務局이 直面한 問題點의 하나이다.

ORG A: 12th Sess., *Fifth Committee*, 630th meeting, 28 Nov. 1957, *op. cit.*, p. 161, para. 63.

(141) *ORG A:* 15th Sess. (part I), *Fifth Committee*, 790th meeting, 14 Nov. 1960, *op. cit.*, p. 175, para. 45.

(142) *ORG A:* 16th Sess., *Fifth Committee*, 872nd meeting, 6 Nov. 1961, *op. cit.*, p. 143, para. 39.

(143) *ORG A:* 17th Sess., *Fifth Committee*, 951st meeting, 19 Nov. 1962, *op. cit.*, p. 216, para. 12.

(144) *ORG A:* 16th Sess., *Annexes*, Vol. I, Agenda item 64, document A/C. 5/891, 18 Oct. 1961, p. 14, para. 3.

(145) *ORG A:* 17th Sess., *Annexes*, Vol. I, Agenda item 70, document A/C. 5/938, 25 Oct. 1962, *op. cit.*, p. 28, para. I.

(146) *Ibid.*, p. 28. Table I.

年 度	8月 31日 現在 職員數				8月 31日 現在 12個月間 任命毛 數		
	1959	1960	1961	1962	1960	1961	1962
永 久 職	998	977	979	945	24	26	28
任 期 職	171	204	252	322	81	117	138
計	1,129	1,181	1,231	1,267	105	143	166

않으면서 事務局 内의 地域的 配分의 均衡을 主張하고 自國의 國民의 登用을 要請하고 있으며, 蘇聯側은 國際公務員制度의 原則를 否認하면서 主要한 政策樹立 職位에 關하여서는 自國所屬 人士를 採用하여 줄 것을 主張하고 있다. 모든 職員任命에 있어서는 各 加盟國政府에 의하여 承認되고 要請된 者를 短期間制로 任命하여야 된다는 것을 主張함으로써 事務總長의 人事政策에 크게 挑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地域的 配分原則에 依據한 人事政策이 直面한 隘路點의 하나이다.⁽¹⁴⁷⁾ 다시 말하자면 蘇聯은 任期制 任命이나 永久職 任命에 있어서도 國際公務員의 中立的인 姿勢를 否認하면서, 그 任命에 있어서 政府가 要請한 人士의 採用 만을 固執함으로써 그려한 範疇에 屬하지 않는 人士에 對하여는 事務局職員으로서의 採用의 길을 막고 있는 形便에 있다. 즉 1962年 8月 31日 現在 蘇聯은 採用可能數 172名 乃至 229名(G-5級 以上)임에도 不拘하고 不過 74名만이 採用되어 있는 現實은,⁽¹⁴⁸⁾ 地域的 配分原則에 立脚하여 “蘇聯國籍의 所有者가 不當하게 採用面에서 外面當하고 있는 것”이라고 蘇聯代表는 非難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事務局職員 採用에 있어서 廣範한 地域的 配分原則의 適用問題는 人事政策이라는 行政的인 問題이면서도, 하나의 國際政治的인 問題로서 國際聯合 總會에 提起되어 論難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憲章에 賦課되어 있는 人事採用問題를 規定한 條項에 對하여, (i) 事務總長에게 指針을 주는 새로운 定則(準則)의 適用의 可能性을 보여 주었으며, (ii) 事務局職員의 各 級에 있어서 比較的 重要한 職位에 比重을 두는 可能性과, (iii) 아직 採用可能數에 未達이거나 採用되어 있지 않는 加盟國에 對한 廣範한 地域的 配分原則의 適用擴大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즉 地域的 配分 原則은, (i) 地域이나 國家이거나를 莫論하고, 가장 變動性이 있는 「퀴타」制度라는 것은 存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事務總長은 職員任命에 있어서는 絶對的인 權限을 갖고 있으며, 廣範한 地域的 配分을 要한다는 것은 憲章에 從屬하는 것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法律的으로 矛盾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政

(147) Goodric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taff of the U.N. Secretariat," *Int'l Org.*, Vol. XVI, No. 3, 1962, *op. cit.*, p. 481.

(148) ORGA: 17th Sess., *Annexes*, Vol. I, Agenda item 70, p. 16, Table 1.

治的으로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ii) 오늘날 各 加盟國에 對한 採用可能數의 適用方法은充分한 指針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iii) 採用可能數에 對한 定則(準則)에 있어서, 各 加盟國의 寄附金納付 比率에 對하여 너무 많은 比重을 두었는데, 다른 要素에도 같은 比重을 두어야 할 것이다. 國際聯合의 全 加盟國은 主權이 平等하다는 原則에 立脚하여 그와 같은事實과 加盟國의 人口面에 對하여도 比重을 두어야 한다고 指摘된 바 있드시, “國際聯合이 民主化되어야 한다”는 點을 가르키는 것이다.⁽¹⁴⁹⁾

如何든 事務局職員 採用에 있어서 地域的 配分問題는 過去 數年間 많이 改善되었다. 事務局에 空席이 생기면 各 加盟國에 空席이 된 事項을 널리 公告하여 採用하도록 努力を 傾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수있다. 事務局當局과 各 加盟國 代表間에 있어서 同問題는 論議되었으며, 事務局當局의 高位職位에 있는 職員이 採用未達이 된 加盟國을 訪問하여 特別히 採用을 講究하려는 誠意 어린 努力도 있었다. 그러나 事務總長과 人事局長은 各 加盟國에서 資格을 具備한 人材를 發見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各加盟國의 國民中 有資格者라고 認定되는 者가 事務局職員으로서의 任命을 受諾하도록 하는 것도 容易하지는 않았다.

廣範한 地域的 配分에 依據하여 職員을 採用한다는 것은 國際公務員制度에 對한 全 加盟國이 關心을 갖고 國際行政을 支援 強化하는 要素이기도 하다. 그것은 相異한 國籍所有者가 教育·文化·思考方式과 慣例등이 다른 世界 各國으로 부터 모여든 職員들을 廣範하게 包含시킴으로써 各 加盟國은 國際的인 協調精神을 더욱 敷篤히 함에 그 意義가 있다.

이러한 地域的 配分原則의 適用을 위한 定則(準則)에 있어서 加盟國의 寄附金 納付에 對한 分擔率, 加盟國의 人口 및 加盟國數를 參照한다는 것은 하나의 準則으로서 그려한 範圍 속에서 事務總長이 職員을 採用하는데 어떤 베두리를 定하는 것이며, 그것의 數字의인 數를 嚴格히 制限하는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地域的 配分에 依據하여 廣範히 職員을 採用함에 있어서, 高度의 能率·能力과 誠實性에 對하여는 아울러 配慮하여야 됨을 等閑視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全 加盟國의 國民이 事務局 内의 職員採用에 보다 많이 參與함으로써, 國際機構의 隆盛과 發展을 위하여 加盟國이 그 責任의 一擔을 맡고 있다는 點과, 서로 協調함으로써 健全한 事務局의 行政이 發展·向上될 수 있다는 見地에서 地域的인 配分原則의 適用이 論議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方便의 하나가 “地域的 配分”에 依據한 職員採用의 原則인 것이고, 이 問題는 아직 國際行政이 日淺하여 그 土壤이 完全히 굳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每年 同問題가 國際聯合

(149) Bailey,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op. cit.*, pp. 90—95.

ORG: 16th Sess., Fifth Committee, 864th meeting, 25 Oct. 1951, p. 95, para. 20. Venezuela 代表 Arraize의 主張. 869th meeting, 1 Nov. 1951, *op. cit.*, p. 124, para. 50. Ukraina 代表 Romanov의 主張. 871st meeting, 3 Nov. 1951, p. 143, para. 43. 佛蘭西代表 Ganem의 主張등에 서도 각각 指摘되었다.

合에서 論難되고 있는 것이다. 各 加盟國의 利害關係가 對立되고 있는 國際社會에서는 事務局의 職員採用面에서 完全한 地域的 配分의 均等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으며, 그러한 目標를 위하여 全加盟國이 相互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過程에 不過하다. 그러기 위하여 人爲的 準則의 適用이 보다 圓滑히 이룩될 것을 바랄 뿐이다. “地域的 配分”原則은 事務局을 보다 健全하게 強化하는 準則으로서 各 加盟國의 協調가 더욱 期待될 따름이다. 事務局의 國際的 特性은 職員이 여러나라 國籍을 所有하는 構成面에 있는 것이 아니라, 憲章 第100條에 規定하고 있는 外部로 부터의 壓力이나 影響力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國際公務員으로서의 精神에 따라 그 課業을 完遂함에 있다고 볼수 있다.⁽¹⁵⁰⁾ (1964. 9. 1)

〈筆者 本大學院 助教授〉

〔附 錄〕

地域的 配分에 의한 專門職位 以上 및 本部所在地

G-5(一般職)級 以上의 職員의 配分狀況⁽¹⁵¹⁾

(1962年 8月 31日 現在)

年 度 國 家 名	61. 8. 31.	62. 8. 31.	採用可能數		採用者數 61.9.1~62.8.31 (166名 任命者中)
			G-5級 以上	P-1級 以上	
◇ 아프리카 地域					
카 래 툴	—	1	1~3	1~3	1
中 阿	—	—	1~3	1~3	—
차 드	—	—	1~3	1~3	—
콩 고(Braz.)	—	—	1~3	1~3	1
콩 고(Leop.)	1	2	1~3	1~3	—
다 호 베 이	1	3	1~3	1~3	2
에 카 오 퍼 아	3	4	1~3	1~3	1
가 봉	—	1	1~3	1~3	1
가 나	4	4	1~3	1~3	1
기 니 아	—	—	1~3	1~3	1
아이보리코스토	—	—	1~3	1~3	—
라 이 베 리 아	1	2	1~3	1~3	1
리 비 아	—	1	1~3	1~3	1
마 다 가 스 카 라	1	2	1~3	1~3	1
마 리	—	1	1~3	1~3	4
모 리 타 니 아	—	—	1~3	1~3	—
모 록 코	2	2	2~3	1~3	—
니 쎈	—	—	1~3	1~3	—
나 이 쟈 리 아	5	7	2~4	2~4	2
세 네 갈	1	3	1~3	1~3	1
씨 라 · 레 온 노	—	1	1~3	1~3	1

(150) Foote, ed., *Servant for Peace*, op. cit., p. 369. ※ (As of Sept. 1, 1964.)

(151) ORGA: 17th Sess., Annexes, Vol. I, Agenda item 70, document A/C. 5/933, 17 Oct. 1962, op. cit., Table 1, Table 2, pp. 16~20.

소	마	리	아	—	1	1—3	1—3	1	
南	阿	—	—	14	13	6—10	5—9	1	
수	단	—	—	3	—	1—3	1—3	7	
단	가	니	카	—	—	1—3	1—3	—	
도	카	—	—	2	3	1—3	1—3	—	
류	니	시	아	1	3	1—3	1—3	2	
U	A	R	—	15	17	3—6	3—4	3	
아	커	•	불	1	1	1—3	1—3	—	
小	計			55	81	38—98	33—95	33	
◇	亞	·	極	東	洲	—	—	—	
撒	—	—	—	21	17	19—32	17—28	1	
버	—	—	—	5	8	1—3	1—3	3	
합	보	—	—	2	2	1—3	1—3	1	
쎄	여	—	—	6	7	1—3	1—3	1	
自	由	—	—	52	49	52—87	47—58	—	
馬	中	—	—	1	1	1—3	1—3	—	
印	來	—	—	62	60	23—39	21—34	3	
印	度	—	—	9	9	5—9	5—8	2	
日	尼	—	—	26	25	26—43	23—39	7	
라	本	—	—	—	1	1—3	1—3	1	
蒙	古	—	—	—	1	1—3	1—3	1	
네	필	—	—	2	4	1—3	1—3	2	
부	란	—	—	7	8	5—8	4—7	1	
파	드	—	—	12	12	5—8	4—7	1	
比	탄	—	—	10	11	5—8	4—7	1	
泰	實	—	—	6	7	2—3	2—3	1	
小	計			221	222	149—258	134—212	26	
◇	東	歐	—	—	—	—	—	—	
알	바	니	아	—	—	1—3	1—3	—	
불	가	리	아	4	5	2—4	2—3	1	
白	露	西	亞	1	2	6—10	5—9	1	
체	코	슬	라	바	17	16	13—22	12—20	9
항	가	리	—	5	5	6—11	6—9	1	
불	랜	드	—	23	26	15—24	13—22	3	
루	마	니	아	2	1	4—6	3—5	1	
우	크	라	이	나	2	5	23—38	20—34	3
蘇	聯	—	—	59	74	172—229	159—203	29	
유	고	슬	러	비	10	10	4—7	4—6	—
小	計			117	144	246—354	218—314	48	
◇	西	歐	—	—	—	—	—	—	
오	스	트	리	아	7	9	5—9	5—8	2
벨	지	—	—	울	21	21	14—23	12—20	—
덴	마	—	—	크	11	10	7—11	6—10	—
핀	랜	—	—	드	6	5	4—7	4—6	—

佛	蘭	西	92	88	68—114	60—101	2
希	臘		10	9	3—4	2—4	—
아 이 스 랜 드			2	2	1—3	1—3	—
아 일 랜 드			6	7	2—3	1—3	1
伊	太	利	24	26	26—43	23—38	6
毒	셈	拜	2	2	1—3	1—3	—
和	蘭		23	24	12—19	10—17	2
荷	왜	이	17	16	5—9	5—8	—
普	토	칼	1	1	2—4	2—3	1
斯	페	인	16	15	10—16	9—15	1
瑞	典		17	13	15—25	13—22	1
英	國		124	116	87—145	77—129	4
小	計		379	364	262—438	231—390	20
◇ 南 美							
알	전	틴	17	18	12—19	10—17	2
불	리	비	7	6	1—3	1—3	—
브	라	질	16	16	12—20	10—17	2
브	철	리	17	17	3—5	3—4	1
콜	럼	비	10	10	3—5	3—4	1
코	스	타	3	2	1—3	1—3	—
쿠	도	바	5	5	3—4	2—4	1
미	미	카	3	2	1—3	1—3	—
에	쿠	아	8	8	1—3	1—3	1
엘	살	바	—	1	1—3	1—3	1
파	대	말	2	2	1—3	1—3	—
하	이	티	4	4	1—3	1—3	—
혼	듀	라	1	2	1—3	1—3	1
액	시	코	10	10	8—14	8—13	1
니	카	라	1	1	1—3	1—3	—
파	나	마	3	2	1—3	1—3	—
파	라	가	4	4	1—3	1—3	—
페	르	루	5	4	1—3	1—3	—
우	르	과	1	5	1—3	1—3	4
베	네	주	엘	라	6—10	5—9	3
小	計		118	123	60—116	54—101	18
◇ 中 東							
아프	카	니	스	탄	3	1—3	—
싸	이	프	러	스	—	1—3	3
이					7	1—3	—
아					2	2—4	—
이	스	라	엘		5	1—3	1
울					6	2—3	—
레	바				7	1—3	1
사우디아라비아					2	1—3	—

시	리	아	6	6	1—3	1—3	—
土	耳	其	9	10	5—8	4—7	2
예		隊	1	—	1—3	1—3	—
小	計		48	51	17—39	16—37	7
◇ 北	美						
外	나	다	45	40	36—59	32—53	1
美	國	國	371	364	367—490	325—434	7
小	計		416	404	403—549	357—487	8
◇ 非 加 盟 國							
西	獨	獨	2	2	—	—	—
자	마	이	—	5	—	—	4
瑞	리	니	22	21	—	—	—
트	도	아	—	3	—	—	2
및	바	고	4	5	—	—	—
無	國	籍					
小	計		28	36	—	—	6
總	計		1,382	1,425	—	—	166

先任職員, 局長 및 事務次長級⁽¹⁵²⁾

(1962年 8月 31日 現在)

年度	61. 8. 31.	62. 8. 31.	◇ 亞·極 東	61. 8. 31.	62. 8. 31.
地 域			印 度	5	6
◇ 아프리카			自 中	4	4
가 나	1	1	由 탄	2	2
나이제리아	—	1	파 洩	2	1
南 阿	2	1	벼 日	1	1
수 단	1	1	本 日	1	1
U A R	—	1	뉴 질 랜 드	1	1
小 計	4	5	小 計	16	16

(152) *Ibid.*, Table 5, pp. 22—23, Table 6, p. 25.

Table 1—6에는 다음範疇에 屬하는 職員은 包含하지 않았음.

用語分野擔當職位.....	501
特別使節을 위한任命.....	119
美國內의 常駐身分을 갖는 者.....	12
無報酬로 休暇에 있는 者.....	44
TAB(技術援助處)特別基金 및 其他 公務聯合機關	168
G-5 以外의 本部地域勤務者	3,021
勞務者.....	224
一線勤務者.....	224
計.....	4,510
地域의配分을 特히 要하는 者	1,425
總計.....	5,935

◇ 東 歐		61. 8. 31.	62. 8. 31.
蘇	聯	9	10
체코슬로바키아		2	3
폴 랜 드		3	3
유고슬라비아		3	3
우크라이나		—	1
小 計		17	20
◇ 西 歐			
英	國	17	18
佛	蘭	11	10
벨	지	2	2
伊	太	2	2
눌	웨	2	2
오	스 트 리	1	1
希	臘	1	1
和	蘭	2	1
瑞	典	2	1
小 計		40	38

◇ 南 美		61. 8. 31.	62. 8. 31.
칠	리	1	2
알	틴	1	1
브	센	1	1
콜	라	1	1
파	비	1	1
베	데	1	1
에	주	—	1
나	엘	—	1
미	파	—	1
小 計		6	7
◇ 北 美			
美	國	22	20
카	나	3	3
小 計		25	23
◇ 非 加 盟 國			
瑞	西	1	1
無	籍	—	1
小 計		1	2
總 計		109	111